



>>

# 가축분뇨 법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2012. 5. 2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 『가축분뇨 법령 개정에 따른 공청회』 일정표

2012. 5. 25(금)

구 분		내 용	비 고
13:00~13:30		등록	
13:30~13:35	5'	개회, 국민의례	사회자
13:35~13:37	2'	참석자 소개	축산자원부장
13:37~13:50	13'	인사말씀	축산경제대표이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13:50~14:20	30'	1 주제 발표 * 가축분뇨법 주요 개정(안) 등	환경부(전형률 사무관)
14:20~14:40	20'	2 주제 발표 * 한국축산업 미래와 축산환경선진화 방안	건국대학교(정승현 교수)
14:40~14:50	10'	휴식	
14:50~16:10	80'	지정토론	좌 장 : 노경상 / 축산경제연구원장 토론자 : 이종광 / 농식품부 사무관 권우순 / 농식품부 사무관 어성욱 / 우송대학교 교수 김용석 / 국립환경과학원 과장 김남배 / 전국한우협회장 이병모 / 대한한돈협회장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준동 / 대한양계협회장 이창호 / 한국오리협회장 이철호 / 파주연천축협조합장 이제만 / 대전충남양돈조합장
16:10~16:30	20'	청중토론	"
	16:30	폐회	

\* 토론자는 단체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목 차

1.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	1
2. 가축분뇨법, 규칙 개정 입법예고 이유 및 주요내용 ....	27
3. 한국축산업 미래와 축산환경선진화 방안 .....	37
4. 토론자 발표 요지 .....	53
• 대한한돈협회	
• 한국낙농육우협회	
• 대한양계협회	
• 한국오리협회	
• 파주연천축협	
• 대전충남양돈농협	
5.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칙 개정(안) …	77



---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

◆ 환경부



## I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부하량이 높아 하천 유출시 수질오염에 치명적
  - 가축분뇨 발생량은 전체 오·폐수 발생량의 1%에 불과하나, 수질 오염 부하량은 37.0%(가축분뇨 BOD 부하량은 생활하수의 90배)
- 오·폐수시설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업자)에 대한 관리는 상대적으로 느슨
  - 그간 1차 산업종사자에 대한 미온적 규제강화정책 추진
  - 축산농가도 전업화·기업화되어 다향의 고농도 수질오염물질 배출
  - 축산업자의 소극적 시설투자와 낮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급으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곤란
- ※ ‘2010년말 현재 전국 하수도 보급률 90.1%, 하수관거 보급률 78% 차지 하나, 가축분뇨 공공처리율은 10%에 불과
- 밀집사육 및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필요성 및 비점 오염화 등 2차 수질오염 방지 필요
  -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12년부터) 대비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필요



가축분뇨 관리 개선대책 없이는 전국 하천의 좋은 물 달성 한계

## II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 □ 가축분뇨 발생 현황

- 가축분뇨 국내 총발생량은 15만 축산농가(가축수: 207백만두)에서 **134.1천톤/일('10)**이 발생하며, 돼지(43%)와 소(42%)의 분뇨가 대부분분임
  - 축산농가의 전업화와 기업화추세에 따라 축산분뇨 대부분(전체 86%, 돼지 95%)은 처리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신고대상 이상의 농가에서 발생
  - 가축분뇨 발생량은 국내 폐수 발생량의 0.9%정도 이지만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37%(BOD 기준) 규모(T-P 기준 54%)

가축분뇨 발생량 ('10)

축 종	계	돼지	젖소	소	닭 · 오리
사육두수(천두·수)	207,010	11,188	508	2,748	192,566
발생량(천 톤/일)	134,111 (100)	57,059 (43)	19,155 (14)	37,653 (28)	20,244 (15)

<가축분뇨 발생량>



<사육농가 VS 사육두수(돼지)>



## □ 가축분뇨 처리현황

- (처리방식) 가축분뇨 처리는 자원화, 정화처리, 해양배출 등이 있는데 이중 88%가 퇴·액비로 자원화, 10% 정화방류, 해양배출 3%임('10)

\* 처리주체별 농가수 : 개별처리 92%(퇴비 93, 액비 5, 정화 2), 공동처리 4%, 위탁처리 및 기타 4%

- (관리대상) 소나 닭의 분뇨는 전량 퇴비화로 개별처리 하지만, 양돈분뇨 처리는 퇴비화(53.1%), 액비화(17.7%), 공동처리(17.2%) 등으로 다양

- 고농도·난분해성으로 공동수역에 미치는 영향이 큰 가축분뇨는 양돈분뇨로 사실상의 관리대상임

축종별 가축분뇨 발생량 및 처리 현황('10년 기준)

(단위 : 천톤, %)

구분	1일 발생량	자원화			정화처리			해양 배출
		계	퇴비	액비	계	공공	농가	
계	<b>134.1</b> (100)	117.4 (87.6)	107.3 (80.0)	10.1 (7.6)	13.7 (10.2)	9.8 (7.3)	3.9 (2.9)	3 (2.2)
돼지	<b>57.1</b> (100)	40.4 (70.8)	30.3 (53.1)	10.1 (17.7)	13.7 (24.0)	9.8 (17.2)	3.9 (6.8)	3 (5.3)
젖소	<b>19.1</b> (100)	19.1 (100)	19.1 (100)					
소	<b>37.7</b> (100)	37.7 (100)	37.7 (100)					
닭·오리	<b>20.2</b> (100)	20.2 (100)	20.2 (100)					

\* 2012년도부터 가축분뇨는 해양배출이 금지됨(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11.12)

- 중·소규모 농가 지원을 위하여 공동처리시설 설치·운영(110개소)

- 운영 81(용량 10,053톤/일, 가동율 74%), 설치중 29(용량 3,333톤/일)

- 대부분 정화처리시설(74개소, 97%)이고 일부가 퇴비·액비시설(7%)임

### III

## 가축분뇨 관리 문제점

### □ 가축분뇨배출시설(축사)의 문제점

- 특정지역에 지나치게 많은 가축이 사육하고 있음에 따라 가축이 배출한 분뇨 등으로 그 지역의 환경용량 초과 사례 발생
  - 생산된 퇴·액비가 많이 발생됨으로써 지역의 환경오염 불가피
- 입지가 불가한 지역에 무허가·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어 수질오염원 관리 부재

\* 불법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행정처분 규정이 미비하다는 감사원 처분요구('11.7.5)

< 축사의 대형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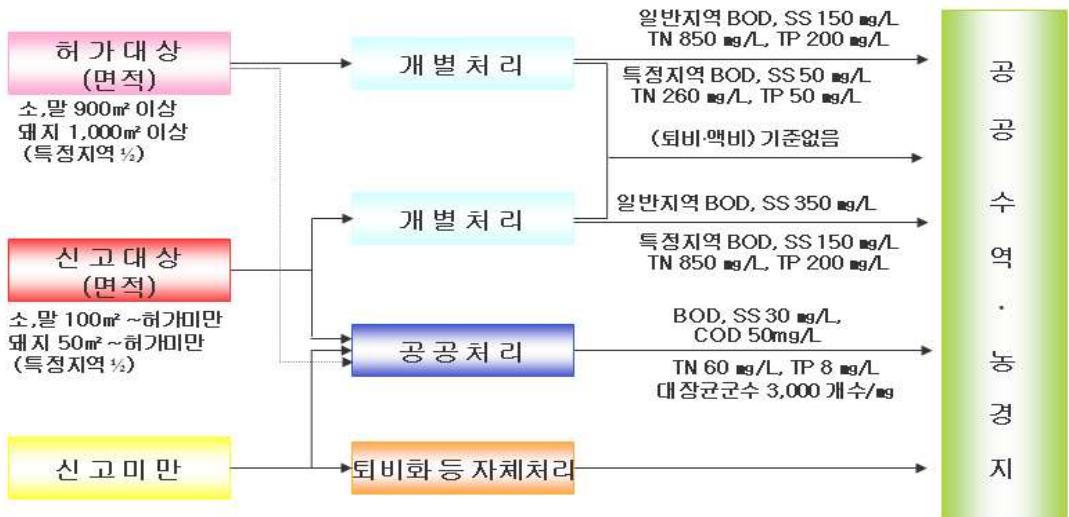
< 무허가 축사>



### □ 가축분뇨 관리의 문제점

- 가축분뇨는 발생·처리과정에서 악취가 심해 축산농가 주변 주민과의 민원발생이 잦음
  - 비위생적인 축사·운동장 관리도 환경오염을 가중시킴
-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과정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농가 및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 가축분뇨 관리체계 >



## < 가축분뇨와 퇴비 혼재 >



## < 가축분뇨로 지천 오염 >



## □ 처리방법별 문제점

### < 자원화 시설 >

- 축산농가 대부분이 퇴비·액비로 자원화하고 있으나, 퇴비·액비의 검사방법, 절차 등 없어 가축분뇨와 퇴비·액비 구분이 모호
  - 가축분뇨 유출 시 처벌할 수 있으나 퇴·액비 유출 시에는 처벌할 수 없음

○ 분뇨 및 퇴비 노천야적, 액비 무단방류, 액비살포시 악취발생 등으로 환경피해 유발

- 저품질 비료는 경종(耕種) 농민들이 사용을 꺼려 축산농가가 적은 토지에 많은 퇴·액비를 살포, 토양·수질오염 유발

## ① 퇴비화 시설

○ 비료가치에 따른 퇴비화보다는 가축분뇨 처분의 방편으로 이용되거나 부품의 노후화 등으로 시설을 방치하는 사례 빈번

- 퇴비의 품질규격에 미달하는 저품질의 퇴비(건축폐재류 등 사용) 생산하고, 경종농가의 사용기피로 축사주변 및 논경지에 야적
- 퇴비보관시설에서 침출수 유출 또는 논경지 등에 야적한 퇴비가 강우시 토양이나 수계로 배출되어 비점오염원이 되고 있음

< 불량한 퇴비화시설 >



< 양호한 퇴비화시설 >



## ② 액비화 시설

○ 액비화시설은 액비살포 농경지 및 초지를 확보해야 하고, 액비 성수기(봄/가을) 이외, 비수기(여름·겨울)에는 저장공간 등 부족에 따른 무단투기 우려

- 액비 살포에 필요한 트랙터, 살포기 등 고가 장비가 필요하고 계절적 수요로 대규모 저장시설 필요

※ 재활용 신고자 및 액비유통센터가 대행 살포하는 경우가 많음

- 저장공간이 부족한 여름·겨울철에는 장마철, 우기 등을 틈타 하천 또는 농경지 등에 무단방류
- 액비의 보관·살포 과정중 악취민원의 발생이 많으며, 물에 쉽게 용해되어 살포지의 인근 수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토양의 오염 및 산성화 촉진

< 불량한 액비화시설 >



< 양호한 액비화시설 >



< 개별농가 정화시설 >

- 시설설치 투자에 소극적이며, 전문운영인력 없이 제어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어 처리효율에 한계
  - 허가대상의 경우에도 열악한 경영으로 영세한 정화처리 관련 사업자가 제안한 공법과 설치시설을 사용
- 방류수질기준이 너무 완화되어 있어 환경 부하유발이 크며, 완화된 기준조차도 준수하기 어려워 희석 등의 방법을 쓰고 있음
  - 농가의 관리소홀로 부적정 처리하거나 무단방류하는 사례가 많음

< 농가의 정화시설 >



< 처리 후 유입 하천수질 >



< 공공처리시설 >

- 축산분뇨 처리의 정책 방향이 자원화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화처리(78개중 74개소) 위주로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
  - 처리수가 법적기준을 만족하더라도 기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수계에 직접 방류되어 공공수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정화시설은 기술적 한계 및 운영비 절감을 위해 놉(尿)위주의 수거·처리
  - 축분을 처리하는 농가는 자가처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 사유로 민원을 제기하고 인근 부지 및 논밭에 야적방치로 비점오염원 증가
- 시설의 초기 부식·마모 등으로 시설개선을 위한 과다한 비용 소요
  - \* 개선비 : '08년 77억원, '09년 69억원 '10년 162억원, '11년 273억원(왕궁 등)
- 해당 지자체는 가축분뇨 반입농가에 대한 낮은 처리수수료 징수와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적자분을 자체예산으로 보전
  - 퇴비화·액비화시설의 경우 퇴비·액비의 유통체계 구축 미흡, 중·저급 퇴·액비 생산, 운영비의 과다 등으로 경제성이 낮음

### <기본 목표>

- ◆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 강화
- ◆ 가축분뇨의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과정 관리
- ◆ 2020년까지 공공처리시설 처리율 50% 달성
  -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조7천억원을 투자, 100개소 신·증설

## 1.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

### 1 | 사전예방적 대책

#### 가 |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 상수원 관리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확대
  - 현재 상수원지역에서 가축사육제한 규제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으나, 팔당 등 일부 주요 상수원 지자체 관련 조례 제·개정에 소극적
    - \* 팔당특별대책지역 가축사육두수(소·돼지) : 26만두('05) → 32만두('07) → 37만두('09)
  -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 관리지역에서는 가축사육제한을 엄격히 하도록 함
  - 수질이 심각히 오염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때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자체에 지정 권고

##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과밀사육지역” 추가

- 환경용량을 초과하여 사육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규제조치가 전무한 실정
    - 지역 양분 및 환경용량을 초과하고 2차 환경오염이 심각한 과밀사육 지역 등에 대해서 적절한 규모로 가축사육 유도 필요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이외, 과밀사육지역을 추가
    -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하여 적정 사육두수의 일정규모 이상 초과한 지역을 “과밀사육지역”으로 고시
- ▶ 농식품부와 공동으로 제도 도입 연구사업 실시 후 세부추진계획 마련

## 나 가축 방목지 등에 관리 강화

### □ 가축배출시설 허가·신고체계 개선

- 사육면적에 가축분뇨의 발생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가축사육두수에 관계없이 사육면적만을 기준으로 허가
- 현행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이외에 사육두수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시설 설치허가, 신고 등 관리제도 도입
  - \* 허가대상시설 : 우사 450㎡ 이상(약 40마리), 돈사 500㎡ 이상(약 350마리)

### □ 방목지에 대한 관리

- 축사없이 방목하는 경우 허가대상에서 배제, 관리 사각지대
- 일정규모이상 방목지역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의무 부여
  - 방목 위주로 사육하는 사슴은 운동장을 배출시설에 추가

## **다 대규모 축사시설 설치 시 사전환경성검토**

### **□ 대규모 축사 입지에 따른 민원발생 급증**

- 가축사육의 전업화·기업화에 따른 축사시설의 대규모화로 수질오염 및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큼
  - 주택이 혼재된 관리지역 등에 10,000m<sup>2</sup>이하로 축사 설치시 환경성 검토가 없어 시설설치 후 악취민원 등 급증
  - 축종에 관계없이 대규모 축사는 허가대상시설로 분류

### **□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성검토 실시**

- 일정규모 이상(배출시설 및 부지 등이 5천m<sup>2</sup>이상인 축사) 가축사육 시설을 환경성검토 대상 포함
  - 대규모 축사의 경우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 구제역 발생시 매몰지 확보 여부 등 검토

## **라 가축분뇨 등 오염지역 실태조사 실시**

### **□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오염실태조사 실시근거 마련**

- 가축분뇨 및 퇴·액비 살포로 인한 수질오염 및 지하수 오염, 토양 오염 등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 미흡
  - 가축분뇨 부적정 처리, 퇴 · 액비 부적정 살포로 인한 민원 및 수질 오염이 가중되고 있으나, 기초자료 부족으로 정책추진 애로
- 가축분뇨 및 액비살포, 가축과밀사육 등으로 인해 수질 및 토양 등 환경오염이 현저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 2 |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관리

### 가 |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

-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인계·인수내용 관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관리)
  - 가축분뇨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과정이 명확하지 않아 농가 및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미흡
    - 사육농가의 가축분뇨 발생·처리과정 등을 명확하고 투명하게 관리 필요
    - 가축의 전염병 확산 억제 등을 위하여 가축분뇨 수집·운반 등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양돈농가,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수집·운반업, 처리업), 재활용 신고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대상으로 2~3년간 시범 실시
    - \* 2012년에 “가축분뇨 전자인계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를 수립하고, 2013년도부터 제주도 및 3~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나 |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등 강화

-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시행규칙 개정)
  -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에 비해 가축분뇨의 방류수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호소, 하천의 주오염원
    -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에 대한 방류수기준이 현저히 낮아 하천의 수질오염 가중
  - ※ 「가축분뇨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를 위한 연구」 용역 실시('11. 6. 28 ~ '11. 27, 우송대학교)

### < 개별 농가 가축분뇨 정화시설 기준(안) >

구 분	항 목	특정지역		기타지역	
		현 행	1단계	현 행	1단계
허가대상 배출시설	BOD	50	40	150	120
	SS	50	40	150	120
	T-N	260	120	850	250
	T-P	50	40	200	100
신고대상 배출시설	BOD	150	120	350	150
	SS	150	120	350	150
	T-N	850	250	-	400
	T-P	200	100	-	100

- ※ 1. 신설되는 시설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2년간 유예
- 2. 환경개선자금 융자를 활용하여 설치·개선 지원

#### □ 정화시설의 개선명령 및 비정상 운영기간 중 응급조치 강화

- 비정상 운영 신고기간 및 개선명령 기간에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및 가축분뇨의 위탁처리 등 조치로 초과방류 제한
  -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 신고기간(천재지변, 개보수 등) 중 처리되지 아니한 고농도 가축폐수를 장기간(3개월 ~ 6개월) 방류하여도 제재조항이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과방류를 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구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에서는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 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강화

#### □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개선

- 처리시설은 장마철 상습 침수지역이나 소하천이상 하천주변 30m이내 또는 연약지반에 설치 제한

- 발효 중인 가축분뇨의 저장시설과 완성된 퇴비 또는 액비를 별도로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설치 의무화
- 퇴비화시설에 지표수, 빗물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는 구조로 설치하도록 함
-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
- 바이오에너지시설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소화액 처리방법 명시

#### □ 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개선

-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함
- 저장조 내 액비의 동결 및 해빙에 따른 저장조 뒤틀림 현상·누수·바닥의 균열여부를 확인·조치하도록 함
-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여유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라 생산된 퇴비·액비의 관리

#### □ 퇴비·액비의 검사방법 등 마련

- 퇴비 및 액비의 기준은 있으나 검사방법 및 절차 등 없어 양질의 퇴·액비 생산을 유도할 수 없고 가축분뇨와 퇴·액비로 구분 관리 곤란
-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액비는 퇴비 및 액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검사기준, 절차 등을 마련

-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는 방류수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여 벌칙조항 적용

○ 중·장기적으로 중금속 기준을 적용하고 항생제 과다사용에 따른 하천 오염이 우려됨에 따라 항생제 기준 마련 검토

#### □ 퇴비·액비의 공공수역 유출 등 엄격관리

○ 누구든지 퇴·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함

※ 퇴·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여 현저하게 오염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생활환경 및 공공수역 인접 농경지 등에 비가림시설 등 없는 야적보관, 살포로 인한 오염행위 방지조치 강화

○ 액비살포 대행자(액비유통센터)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설설치자와 동일한 벌칙 적용

### 마 무허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 무허가·미신고 축사 관리 필요성

○ 가축분뇨 배출시설이 설치 불가 지역에 설치되거나, 설치기준 미달하는 경우 행정처분 규정 미비(감사원 지적사항, '11.7.5)

- 지도·점검 시 이를 확인하더라고 고발에 따른 벌금만 납부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조치 불가

- 돼지(약 34% 추정), 닭·오리 등 사육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를 조속히 신설 필요

####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신설하고, 미이행 시 폐쇄명령 근거 등 신설

- 축사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신설
  -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처리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신설
- 무허가 등 허가취소 배출시설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관리(농식품부와 협의 추진)
- “가축분뇨법”에서 허가취소 시설을 「축산법」에서 허가 또는 등록을  
허용하는 경우 정부의 축산정책 및 가축분뇨 관리의 혼란 초래
  - 허가취소 배출시설에 대해 축산업의 허가취소 사유에 포함되도록  
「축산법」을 개정하고, 축산업의 허가취소 시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이 허가취소가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 현재에는 “가축분뇨관리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취소를 받은 경우에만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를 하도록 함(2012.2.22 개정)

### 3 | 영업관련시설 관리 강화

#### 1 | 재활용 시설 관리 강화

##### □ 재활용시설의 설계·시공 강화

- 재활용시설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시설의 준공검사 실시 근거 마련

※ 현재는 재래식 방식으로 시설설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에 따라 스스로, 건축업자 등이 설치하거나 설계·시공업자가 설치

## □ 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강화

- 가축분뇨를 1일 400kg/일이상 재활용하려는 자는 재활용 신고를 하고, 재활용시설의 기본적인 설치 · 운영기준만 제시되어 있음
  - 설치·운영기준 위반시 300만원 벌금에 불과하고 개선명령 위반 시 행정적 제재 규정이 없음
- \* 재활용 신고자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로 분류됨(전국 약 1,654개소)
- 재활용업자 생산하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
  -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게 생산하여야 함
-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보관하거나 보관시설 외의 장소에 가축분뇨를 보관할 수 없도록 함
- 설치·운영기준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미행시 반입처리 금지 명령 및 폐쇄명령을 신설

## 2 처리업 허가대상 명확화 및 관리 강화

---

### □ 영업관련 시설 중 허가대상과 신고대상 시설 구분 명확화

- 처리업과 재활용신고 대상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 우려
  - \* (처리업의 정의)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으로 규정
-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중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

## □ 처리업시설의 허가절차 및 관리 개선

- 영업허가 전 사업계획서 제출 및 처리업시설 허가 전 준공검사 규정이 없어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곤란
  - \* 「하수도법」의 분뇨수집·운반업, 「폐기물관리법」의 처리업은 허가전에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 규정이 있음
-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허용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등을 명시
- 처리업시설의 준공검사 이행과 전자인계·인수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제재처분 신설(경고 또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 2.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개선

### 〈 기본 방향 〉

- ◇ 정화처리에서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전환
  - ◇ 설치·운영주체를 지자체 중심에서 수익성을 보장하는 지역농협 중심으로 단계적 전환
  - ◇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지원하는 환경순환형 시범사업 추진
  - ◇ 돼지분뇨 처리를 강화하고, 비점오염원 비중이 높은 소의 분뇨처리
  - ◇ 한센인 등 영세농가의 분뇨처리 지원 확대
- ⇒ 100개소 신·증설(공공처리시설 보급률 50% 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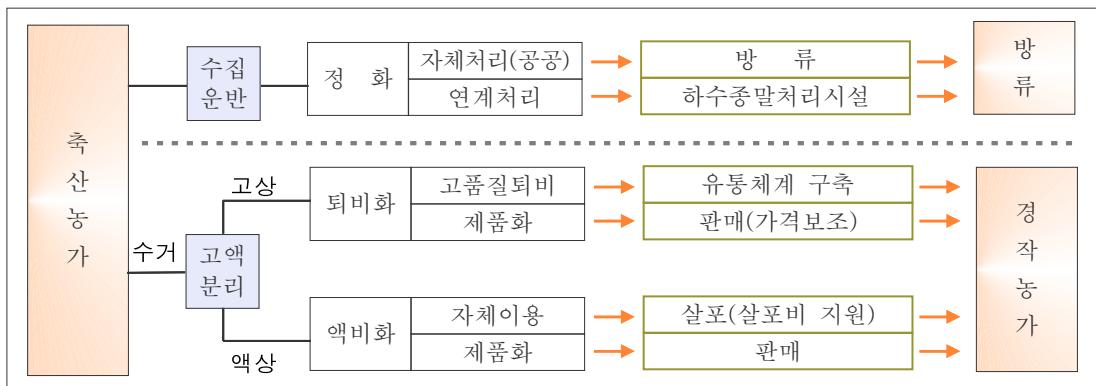
## 가 지역농협이 설치하는 시범사업 추진

### < 지역단위통합관리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개요 >

-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3조, 제42조
- ◆ 사업주관기관 : 시장·도지사
- ◆ 사업시행·운영 주체 : 생산자단체(지역농협)
- ◆ 지원대상 : 수익성이 있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
- ◆ 지원조건(안) : 국고 70%, 시·도(시·군) 10%, 지역협동조합 20%

- 수익성이 있는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시설을 생산자단체인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설치·운영하는 시범사업 추진
  - 지역특성, 환경개선 시급성 유무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4곳 (논산·안동·영주·화성시)에 대해 2012년도 시범사업 추진 중(800억원)
  - 사업 여건이 유리한 4곳을 선정하여 2013년 2차 시범사업 추진
-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이외 지역농협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2020년까지 30개소 지원

### <공공처리시설과 시범화사업의 가축분뇨 처리>



## ○ 시·군 공공처리시설과 농협의 자원화시범사업 비교

경제성 사업자	수거·처리 수익금	운영비	사후관리비
시 · 군	수집·운반·처리 16,000원/톤	정화시설 약품·전기비 등 33,000원/톤	방류처리 수계로 고농도 방류수 방류
농 협	수집·운반·처리 18,000원/톤	퇴비화시설 톱밥·왕겨 등 30,000원/톤	유통·판매 고품질 비료 판매(17만원/포)

비고 : ① 시·군의 정화시설은 톤당 17천원(연간 5.1백만원/톤=17천원×300일) 운영비 지출  
 ② 농협의 퇴비화시설은 톤당 12천원/톤 지출, 퇴비 판매금 포함시 약 2천원/톤  
 (연간 60만원/톤=2천원×300일) 수익 창출

## 나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추진

- 가축분뇨 통합관리시설(바이오, 정화, 퇴비·액비 시설 등)과 연계하여 분뇨 발생부터 처리 및 이용까지 고려하는 시범사업 추진
  - 가축분뇨 이용확대로 유입농가의 분뇨 외부 무배출, 친환경농산물 재배 및 사료작물 공급 등 환경순환형 모델 수립
  - 퇴비·액비 및 바이오가스 등 자원화 생산물의 활용이 유리한 여건을 갖춘 지역 선정
-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 · 군은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을 받아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모델 마련 후 지자체 보급 확대
  - ※ '12년 1개소 및 '13년 3개소 지원, 2020년까지 30개소 설치지원

### <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시범사업 개요 >

- ◆ 지원근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부터 제26조
- ◆ 사업승인기관 : 시장·도지사
- ◆ 사업시행·운영 주체 : 시·군
- ◆ 기술지원 : 한국환경공단(환경순환형 모델 개발 기술지원 및 설계)
- ◆ 지원대상 : 통합관리 처리시설
- ◆ 지원조건(안) : 국고 80%, 시·도(시·군) 20%
- ◆ 추진방식 : 통합관리시설과 연계하여 환경순환형 모델 마련 후 시설 설치

#### \* 환경순환형 모델의 개발 가이드라인

- 공통사항 : 경작농가의 친환경적인 농산물생산 및 사료공급, 농가의 분뇨유출 제로, 생산된 사료 이용계획 등 종합적인 환경순환형 모델 수립
-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지역: 가스생산 이용·판매 계획, 소화액 처리방법 및 퇴비·액비의 유통, 판매 방안
- 정화시설, 퇴비·액비화 이용 촉진지역: 퇴비·액비 활용계획 및 유통, 판매 방안

## 다 자자체 자체 시범사업 설치사업 추진

- 일반 국고신청사업도 기존의 고비용 비효율적 운영방식 대신 시범 사업 방식으로 설치 유도
- 주요 비점오염원으로 작용하는 소의 분뇨를 처리하기 위해 공공 처리시설 설치 지원(5개소이상)
  - 우분의 경우 돈분에 비해 악취가 없어 가축분뇨 및 퇴비를 축사 부지, 농경지 등에 비가림시설 등 없이 야적보관
- 가축분뇨 다량 발생지역의 한센인 가축사육 정착촌에 공공처리 시설을 설치하여 가축분뇨 수거처리(5개소이상)

\* 가축사육 정착촌수는 66개소이며, 익산왕궁 등 공공처리시설 6개소 운영 중

### < 시범사업 기대효과 >

- 안정적인 가축분뇨 처리로 수질, 생활, 토양 등 환경질 개선
  -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축산계 비점오염원 발생 최소화
- 지자체-전문기관이 공동으로 환경순환형 공공처리시설 모델 개발을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 바이오가스, 퇴비·액비 생산 등 경제성 향상에 따른 운영비 절감 등 수익성 극대화
- 경작농가에 양질의 비료 공급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부담 경감으로 2012년 해양배출금지 및 FTA 대비 등 농가의 경쟁력 제고

## 3.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지도·점검 강화

### □ 지도·점검 실태

- 가축분뇨 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고유업무이나, 자치단체장의 지도·점검 의지 부족(민원발생 사업장 위주의 지도·점검 실시)
  - 가축분뇨 담당(1~2명)이 인·허가 및 민원, 점검업무를 겸임하는 등 단속여건 열악
- 가축분뇨 불법투기 등 위법행위자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축산 보조금 지급

### □ 지도·점검 강화 방안

- 지도·점검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치단체 환경·축산부서와 환경감시단과의 합동점검 정례화(분기1회 이상)
    - 주요 하천의 오염원인 인접 축사밀집지역에 대해 특별관리
- ※ 가축분뇨 민원 및 중점관리대상 시설 등 상시 점검체계 유지

- 해당 지자체의 환경부서는 축산농가의 점검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하고, 환경부는 이를 농식품부에 통보하여 불법 농가의 보조금지원 제한  
※ 년 3회 이상 위반 3년, 연간 1회 위반 1년 지원 제한 추진(농식품부)

## 4. 가축분뇨 관리 조직 강화

### □ 가축분뇨 관리 T/F팀 구성·운영

- 목적 :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추진
  -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 시범사업 추진, 중·장기 과제 발굴
- 구성 :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과 일괄 추진
  - 물환경정책과장(총괄), 가축분뇨팀, 유역총량과 비점오염관리팀(1명), 국립환경과학원 수질공학과(1명), 한국환경공단 업무 담당자(2명), 관계전문가(농촌진흥청 연구관, 대학교수 등 3명이상)
- 운영 기간 및 장소 : 2012.4.30 ~ '13.12.30, 물환경정책과
  - 별도의 인력 파견 없이 매월 2회 점검회의를 개최, 다만, 대책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1명 본부 파견 근무

### □ 한국환경공단 내 가축분뇨관리팀 구성·운영('13년도부터)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령 개정하여 공단에 기능부여

### □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

- 입안 및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 완료('11.9)
- 입법예고,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12.5 ~ 7)
- 법 :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제출('12.8)
- 시행규칙 : 개정안 공포('12.8)

### □ 지역단위통합센터 자원화 시범사업 추진

- 1차 시범사업 추진('12)
  - \* 수질개선이 시급하거나 가축분뇨 발생량이 많은 논산·안동·영주·화성시
- 2차 시범사업 추진('13 ~ )
  - \* 1차 시범지역이외에 약 4곳을 선정하여 추진

### □ 한국환경공단이 기술지원하는 환경순환형 시범사업 추진

- 2013년도 시범사업 3~4곳 선정 추진('12.5월)

### □ 가축분뇨 관리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가축분뇨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 ('12.5월부터, 한국환경공단)
- 가축분뇨 등 실태조사('12년부터, 국환경환경과학원) 및 양분총량제 도입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13년, 농식품부 협조)

---

## **가축분뇨법, 규칙 개정 입법예고 이유 및 주요내용**

---

◆ 환경부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유 및 주요내용

## [법률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축분뇨 등으로 오염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축분뇨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전자인계·인수제도 도입, 불법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과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의 신설, 재활용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실시, 퇴비·액비 검사방법·절차 등 신설, 재활용시설의 개선명령 미이행시 가축분뇨의 처리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등 재활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지역농협조합의 장에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 (1)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 퇴비·액비의 살포, 과밀사육 등으로 인해 수질환경 및 토양환경 등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공무원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함.
- (2)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상수원 등 하천의 수질개선 및 보전, 지하수오염 또는 토양오염 지역의 관리방안 마련하는 등 지역주민이 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나. 상수원 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안 제8조 개정)

-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상수원 관리지역인 수변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 가축분뇨로 인해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음.
- (2) 지역 주민의 주요 상수원관리지역인 수변구역과 오염된 상수원 지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사항 개선

(안 제14조제2항·제3항 개정)

- (1) 임대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시설설치자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 (2)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임대차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를 명확히 하여 배출자가 처리하도록 함.

#### 라. 퇴비·액비 관리 강화, 배출시설·처리시설이외,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처리시설 등의 준공검사 확대실시(안 제15조 및 제17조 개정)

- (1) 시설설치자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하는 퇴비·액비를 퇴비·액비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설의 준공검사시 퇴비·액비의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퇴비·액비에 대한 검사의 방법, 검사의 절차·기준 등을 신설함.
- (2) 현행 준공검사 대상을 가축분뇨 배출시설·처리시설에서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로 확대하며, 생산된 퇴비·액비는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여야 하고,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등이 퇴비·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 시킬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함.
- (3) 생산된 퇴비·액비를 적정 관리하며,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마. 가축분뇨의 처리주체 명시 및 전자 인계 · 인수제도 도입(안 제16조의2 및 안 제37조의2 신설)

- (1) 시설설치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위탁 처리하도록 명시함.
- (2)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 · 운반 및 처리하는 자는 가축분뇨의 인계 · 인수에 관한 사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량 등을 입력한 때에는 변경허가, 변경신고, 퇴비 · 액비 관리대장 작성 등 관련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
- (3) 가축분뇨 배출부터 수집 · 운반, 최종처리까지 인계 · 인수내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가축분뇨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함.

바.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 신설(안 제17조 개정 및 안 제17조의2, 안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신설)

- (1) 정화시설 운영자가 개선명령 기간 또는 비정상 운영기간 중에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하여 방류할 때 제재조항이 없어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도록 함.
- (2) 무허가 및 미신고의 배출시설 · 처리시설에 대해 사용중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며,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3) 불법 무신고,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음.

**사. 재활용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강화, 처리 금지명령 및 개선명령 신설(안 제27조 개정)**

- (1) 재활용시설을 처리시설의 설계 · 시공업자에게 설치하도록 하고 일정규모의 보관시설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설치 · 운영기준을 강화하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리 금지명령과 폐쇄명령 신설
- (2) 재활용업자에게 양질의 퇴비 · 액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위법시설에 대하여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음.

**아. 처리업시설의 허가대상 명확화 및 관리강화(안 제28조 개정)**

- (1) 처리업과 재활용신고 대상시설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가축분뇨 관리에 혼선 우려되고, 처리업시설의 허가 전 준공검사 및 관련영업의 허가신청 전 사업계획서 제출 규정이 없어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할 수 있는 체계적 관리가 곤란
- (2) 가축분뇨를 처리시설 중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하며, 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허용 보관량 또는 보관기간 등을 명시하여 가축분뇨를 적정처리 하고자 함

**자. 자원화 중심의 공공처리시설 설치 활성화(안 제2조제9호 개정, 안 제23조의 2 신설, 안 제24조 및 제32조 개정)**

- (1) 공공처리시설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시설외에 생산자단체인 지역조합의 장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을 추가하고 바이오에너지시설 설치승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의제 처리하여 인 · 허가절차를 간소화함.
- (2) 공공수역에 오염부하량이 큰 정화시설 대신 자원화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오염부하량을 삭감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차. 지방이양위원회에서 결정한 지방이양 대상업무 정비(안제24조제3항 개정, 안 제38조 및 제41조 개정)

- (1) 시 · 도지사가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설치승인한 것을 시 · 도지사 스스로 설치승인하도록 하고 가축분뇨업무담자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장관에서 시 · 도로 이양하며, 시설설치자 및 공공처리시설설치자 등의 보고 · 검사에 관한 업무를 국가,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서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 이양함
- (2) 지방이양위원회의 결정한 국가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 업무의 활성화를 도모 함.

카. 벌칙 및 과태료 신설(안 제49조부터 제51까지 개정)

- (1) 축산업자가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거나 재활용신고자가 반입 처리금지명령 및 폐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퇴비 · 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킨 자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 (2)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거부 · 방해 및 기피한 자, 가축분뇨의 전자인계 · 인수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최근 축산농가가 급속도로 전업화·기업화되면서 다량의 고농도·난분해성 수질 오염물질인 가축분뇨를 발생하고 있으나 가축분뇨 관리는 20년 전 수준으로 그 동안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농가)에 대한 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하여 질소·인이 다량 함유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하천에 유출시 하천·호수의 부영양화 발생 등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므로 가축분뇨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을 강화하고,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재활용시설의 변경내용을 개선하는 등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개선(안 제6조 및 제7조)

-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의 규모가 감소되거나 위탁변경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시설설치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가축분뇨의 관리가 명확하지 아니함.
- (2) 배출시설이 혼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감소하거나 위탁자를 변경하고 위탁 내용 중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 가축분뇨의 배출시설을 변경 신고하도록 함.

#### 나. 처리시설 등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개선(별표 2 및 안 제15조)

- (1) 가축분뇨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식·마모 또는 균열·파괴 등으로 가축 분뇨 또는 퇴비·액비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거나 지표수·빗물 등의 유입에 따른 주변환경 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수단 부재

(2)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 소화액 등 축사주변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및 생활악취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있도록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개선하고 가축분뇨처리시설 중 혐기성 생물학적 시설의 설치기준 신설

**다.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별표 3 제2호 개정)**

- (1) 생활하수 및 공장 폐수에 비해 가축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호소, 하천의 주오염원이며, 특히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방류수기준이 현저히 낮아 조류 발생인자로 작용
- (2) 특정지역 허가대상 시설은 농가의 시설투자가 필요한 수준의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그 이외에는 농가 보유시설의 정상 가동을 통해 달성 가능한 정도의 기준 적용

**라. 재활용의 변경신고 대상 추가(안 제27조제1항)**

- (1) 재활용시설의 증설, 운영 주체 변경시에도 신규로 재활용 신고를 하여 불편 초래
- (2) 재활용시설의 시설용량 증가(100분의 30 이상)나 사업장의 명칭, 대표자 변경시 등을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하여 재활용업자의 불편을 없애고 재활용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마. 가축분뇨배출시설 장부의 기록·보존 간소화(안 별표3의2 제4호)**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를 간소화하고, 작성대상을 허가규모이상 시설설치자로서 정화시설 설치자로 한정하고 퇴비·액비를 생산하는 자원화설치자는 제외토록 함.



---

# **한국축산업 미래와 축산환경선진화 방안**

---

◆ 건국대학교, 정승현 교수



# 한국축산업의 미래와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2012. 5.25

건국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정승현 교수

## 목 차

I 한국 축산업의 변화

II 가축분뇨 관리선진화에 대한 이해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I . 한국 축산업의 변화

## I . 한국 축산업의 변화

### ■ 농촌 인구 및 소득 변화

(단위 : %, 천원)

구 분	'05년	'09년	'10년	비고
총인구 60세 이상	13.1	15.0	15.4	
농가 60세 이상	39.3	44.7	41.8	
축산 농가	6.5	6.7	6.9	
비농허가 소득	34,779	41,184	43,581	
농가 소득	30,503	30,814	32,121	

- '10년 농가 60세 이상 인구는 총인구 60세 이상 대비 약 271%
- '10년 농가 소득은 비농어가 소득 대비 약 73.7%

## I . 한국 축산업의 변화

### ■ 주요 농축산물 1인당 연간 소비량

(단위 : kg)

구 분	`00년	`05년	`09년	`10년
쌀	93.6	80.7	74.0	72.8
밀	35.9	31.8	31.4	31.0
쇠고기	8.5	6.6	8.1	8.8
돼지고기	16.5	17.8	19.1	19.3
닭고기	7.0	7.5	9.6	10.7
우유	59.6	62.7	62.3	64.9

- 쌀과 밀의 소비량은 '00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
- 돼지고기 및 닭고기 소비량은 '00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 쇠고기 소비량은 '05년부터 증가

## I . 한국 축산업의 변화

### ■ 가축사육규모

(단위 : 천마리, 천가구, %)

구 분		`08.12	`09.12	`10.12	`11.12
한·육우	마리수	2,430	2,635	2,922	2,950
	가구수	181	175	172	163
젖 소	마리수	446	445	430	404
	가구수	7.0	6.8	6.3	6.1
돼 지	마리수	9,087	9,585	9,881	8,171
	가구수	7.7	8.0	7.3	6.3
닭	마리수	119,784	138,768	149,200	149,511
	가구수	3.20	3.54	3.60	3.40

- '11.12까지 한·육우 사육두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가구수는 감소함
- '11.12까지 젖소 사육두수 및 가구수 감소

## I. 한국 축산업의 변화

### ■ 축산물 수익성

구 분		단위	'05년	'09년	'10년
한우 번식우	소득	천원/마리	1,216	264	427
	순수익	"	488	△531	△365
한우 비육우	소득	"	1,317	1,348	1,948
	수순익	"	392	198	739
육우1)	소득	"	-	75	600
	순수익	"	-	△670	△251
젖소	소득	"	2,569	2,680	2,772
	순수익	"	1,716	1,796	1,810
비육돈	소득	"	95	105	58
	순수익	"	82	88	40
산란계	소득	원/마리	1,715	△847	△2,628
	순수익	"	326	△2,369	△4,036
육계	소득	"	363	413	392
	순수익	"	287	333	322

주1) 육우는 '08년부터 통계청 신규조사 || \* 소득=총수입-경영비, 순수익=총수입-생산비

## I. 한국 축산업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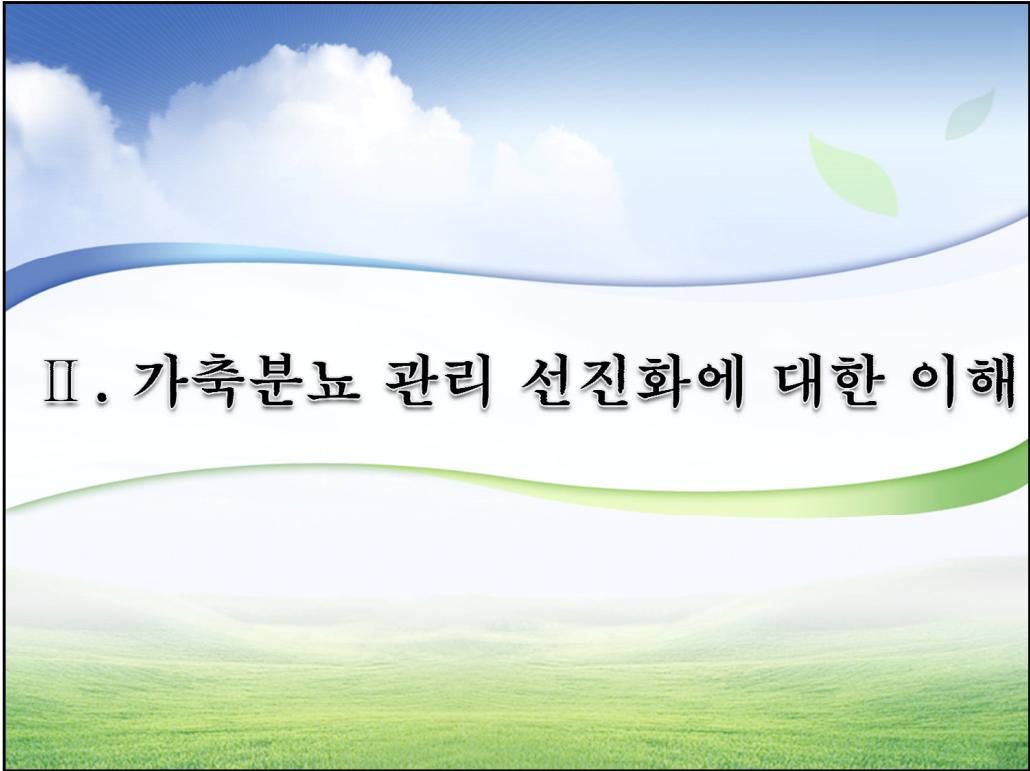
### ■ 농림어업 취업자 및 총취업자 대비 비중

(단위 :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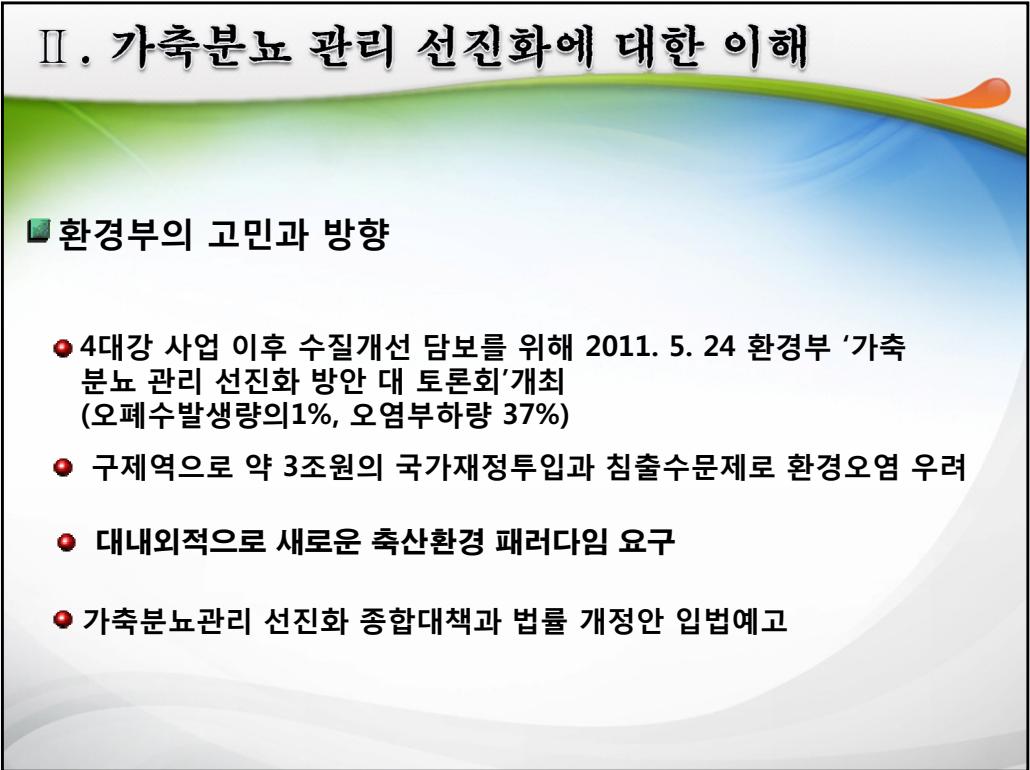
	2007		2008	
	농림어업취업자	구성비	농림어업취업자	구성비
한국	1,723	7.4	1,686	7.2
일본	2,720	4.2	2,680	4.2
중국(도시)	4,263	3.5	4,101	3.4
미국	2,095	1.4	2,168	1.5
캐나다	393	2.3	377	2.2
호주	340	3.2	344	3.2
영국	398	1.4	433	1.5
프랑스	876	3.4	789	3.0
독일	859	2.3	872	2.3
네덜란드	231	2.8	225	2.7

자료: 통계청, ILO(laborsta.ilo.org)

\* 한국 농림어업취업자(비중) : ('09) 1,648천명 (7.0%), ('10) 1,566천명 (6.6%)



## II.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대한 이해



### ■ 환경부의 고민과 방향

- 4대강 사업 이후 수질개선 담보를 위해 2011. 5. 24 환경부 '가축 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 대 토론회' 개최  
(오폐수발생량의 1%, 오염부하량 37%)
- 구제역으로 약 3조원의 국가재정투입과 침출수문제로 환경오염 우려
- 대내외적으로 새로운 축산환경 패러다임 요구
-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과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 II.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대한 이해

- **국민들의 관점:** -축산농가에 대한 적정한 규제 필요  
-축산보전보다 환경보전의식이 더욱 강함
- **환경부의 관점:** -환경보전을 위한 절대 필요 조치  
-축산업을 일반산업으로 인식
- **농식품부의 관점:** -‘축산업 위축’을 근거로 크게 반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일정 부분은 수용 필요
- **축산농가의 관점:** -‘축산농가도 구제역 피해자’ 인식  
-최근 FTA체결로 가장 큰 피해  
-사료값등 생산비인상과각종 축산위축요인  
-강력한 축산억압정책

## II.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대한 이해

환경부 종합대책	적용 문제점
<p>1. 가축분뇨 관리제도 개선</p> <p>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상수원 관리지역을 가축사육제한 구역으로 확대</li><li><input type="checkbox"/>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과밀사육지역” 추가<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하여 적정 사육두수의 일정규모 이상 초과한 지역을 ‘과밀사육지역’으로 고시</li></ul></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input type="checkbox"/> 양분총량 개념으로 시군단위 ‘과밀사육지역’ 지정시 지역 축산업 붕괴 위험(홍성, 이천 등)<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가축분뇨는 퇴비 등으로 시군을 벗어나 유통되고 있으므로, 단순 발생량 기준으로 가축사육제한은 불합리함</li><li>- 또한 적정 처리 후 부하량 적용 필요</li></ul></li></ul> <p>* 원수 BOD 40,000ppm → 액비 3,000</p>

- 전국적인 양분총량제 일제 도입은 아니나, **지역별 양분총량제**를 도입한 것으로 곧 **사육총량제의 의미**를 가짐 – 축산업 위축

## II.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대한 이해

환경부 종합대책	적용 문제점
<b>나. 가축 방목지 등에 관리 강화</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축배출시설 허가·신고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이외에 사육 두수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고 등 관리제도 도입</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방목지에 대한 관리</li> </ul>	방목지에 대해서만 적용 필요 -사육두수 기준을 추가할 경우, 양돈은 농식품부 적정 사육두수 기준( $0.79m^2/두$ )와 환경부 두당 사육면적 기준( $1.4m^2/두$ ) 차이가 커 혼란 우려
<b>다. 대규모 축사시설 설치 시 사전 환경성 검토</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대규모 배출시설에 대한 환경성 검토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정 규모 이상 [배출시설 및 부지 등이 5천 <math>m^2</math> 이상인 축사] 가축사육시설을 환경성 검토 대상 포함</li> </ul> </li> </ul>	‘환경영향평가법’ 기준에 따라 적용 필요 - 양돈장의 경우, 약 1,000두 사육 규모로써 [건폐율 20% 적용 시 축사면적 1천 $m^2$ ] 국내 양돈농가 평균 사육두수(1,287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상향 조정 필요

- 부지 5천  $m^2$  이상 축사를 ‘대규모 축사시설’로 정의하는 것은 현실과 상충됨.

## II.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에 대한 이해

환경부 종합대책	적용 문제점
<b>라. 가축분뇨 등 오염지역 실태조사 실시</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오염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li> </ul>	- 실태조사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가축질병 전파 등 우려로,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협의 필요

- 개정 법률안 (제7조의3 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에서 농장 방문시 거부, 방해 또는 기피 시 사육 중단 및 폐쇄 조치 가능토록 명시하고 있어 과잉 규제로 볼 수 있음
- 축산농가에 불필요한 피해의식을 심어줄 수 있어 실질적인 필요상황을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적절한 실시 방안 필요

## II. 종합대책 주요내용 및 적용 문제점

환경부 종합대책	적용 문제점
<p>2. 가축분뇨 및 퇴.액비의 관리          가. 가축분뇨 수거체계 확립  <input type="checkbox"/>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 처리까지 인수.인계내용 관리(전자정보 처리 프로그램으로 관리)</p>	<p>현실적으로 농가 및 가축분뇨사업자가 적용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환경공단의 폐기물 관리프로그램과 차별화 필요</p>

- 축산업 선진화 대책으로 농식품부가 추진중인 KAHIS 시스템 및 가축분뇨 차량 GPS 부착사업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농식품부와 협의 후 관리체계 구축 필요
- 현장 적용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므로, 환경부가 제주지역 시범사업 완료 후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현실적 문제점으로 혼란 우려

## II. 종합대책 주요내용 및 적용 문제점

환경부 종합대책	적용 문제점
<p>나. 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등 강화  <input type="checkbox"/> 정화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강화          (시행규칙 개정)          - 허가대상 기타지역: BOD 120, SS 120, <u>T-N 250</u>, T-P 100  <input type="checkbox"/> 정화시설의 개선명령 및 비정상 운영기간 종 응급조치 강화</p>	<p><input type="checkbox"/> 총질소 규제가 250mg/L로 강화될 경우, 기존 양돈농가 정화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          - 양돈장 172건 수질분석 총질소 평균치: 623 (대전충남조합 수질분석실, 2009~2010)          - 막대한 추가 시설비 부담으로 사실상 정화방류 처리 불가          - 외부온도 영향을 많이 받는 미생물처리의 특성 상 계절적으로 온도 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T-N 250mg/L 수치를 맞추는 것은 농 가의 경우 사실상 불가능할 것임          - 농가가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제도 도입 시 오히려 불법처리 및 육상 환경오염 문제 발생 우려</p>

## II. 종합대책 주요내용 및 적용 문제점

환경부 종합대책	적용 문제점
<p>마. 무허가, 미신고 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미신고 축사관리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돼지[약 34% 추정], 닭[약50%추정], 오리[약70% 추정] 등 사육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행정처분 근거 신설 필요</li> <li>□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중지명령을 신설하고, 미이행 시 폐쇄명령 근거 등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사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중지 명령에 같은하는 과징금 제도 신설</li> <li>-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처리시설기준 위반 등에 대해 시정명령,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신설</li> </ul> </li> <li>□ 무허가 등 허가취소 배출시설을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제와 연계하여 관리 (농식품부와 협의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가취소 배출시설에 대해 축산업의 허가취소 사유에 포함되도록 ‘축산법’을 개정하고 축산업의 허가취소 시에도 ‘가축분뇨법’에 따른 해당 배출시설이 허가취소 되도록 관련 규정 개정</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허가·미신고 축사의 경우, 기존 건축법 등에서 이를 이미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축분뇨법에서 이를 별도 처리하는 것은 법 체계에 부적합함. 건축법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임.</li> <li>- 이미 축산업을 관리하는 축산법에서도 축산업 등록 및 허가제 도입시에 무허가 축사를 포함시키고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으므로, 일방적인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도입은 전체 축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음.</li> <li>□ 법 형평성 유지를 위한 단계적 접근 필요</li> </ul>

## II. 종합대책 주요내용 및 적용 문제점

환경부 종합대책	적용 문제점
<p>3. 영업관련시설 관리 방안</p> <p>가. 재활용시설 관리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시설의 설계·시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시설은 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로 하여금 설계·시공하도록 명시하고, 시설의 준공검사 실시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는 재래식 방식으로 시설설치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에 따라 스스로, 건축업자 등이 설치하거나 설계·시공업자가 설치</li> <li>□ 재활용 시설의 설치·운영기준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신고자는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로 분류됨(전국 약 1,654개소)</li> <li>- 재활용업자가 생산하는 퇴비 또는 액비는 ‘비료관리법 시행령’ 따른 비료생산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함.</li> </ul> </li> </ul> </li> </ul> </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재활용 신고자는 ‘400kg/일 이상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로써, 돼지 78.4두 이상 사육농가에 해당됨.[78.4두 × 5.1배출원 단위=400리터/일] 모든 재활용시설에 대해 설계·시공업자가 설치도록 하는 것은 재활용 신고 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시설 자가시공을 금지하는 것임. 생산된 퇴·액비의 품질기준이 있으므로 시설기준은 불필요한 규제임.</li> <li>□ 법률상 가축분뇨 관련 영업자는 3가지로, 1.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2. 가축분뇨 처리업, 3. 가축분뇨 시설관리업으로 양돈농가가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 신고 농가 모두가 비료생산업 등록기준 [공장등록] 시설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가축분뇨 퇴·액비 처리를 제한하는 것임.</li> </ul> </li> </ul>

## II. 종합대책 주요내용 및 적용 문제점

### 나. 처리업 하가대상 명획화 및 관리 강화

영업관련 시설 중 하가대상과 신고대상 시설 구분 명획화

- 가축분뇨 처리시설 중 처리공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바이오에너지 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처리업으로 분류

처리업 시설의 하가절차 및 관리 개선

가축분뇨 처리업의 하가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 시설 및 장비조건, 2. 기술능력 2가지 항목을 충족시켜야 하나(붙임 참조), 개별 바이오에너지 시설 및 정화시설 농가가 이를 충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

## II. 종합대책 주요내용 및 적용 문제점

### • 참고: 가축분뇨 처리업 하가조건 (시행령 별표 3)

시설 및 장비	기술능력
가. 사무실 및 실험실 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1식(式) 이상 다.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 기기 1조(組) 이상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2) 화학적 산소요구량 3) 부유물질량 4) 총 질소(TN) 및 총 인(TP) 5) 대장균 군수(群數) 6) 간류염소량 및 염소이온농도 7) 수소이온농도 및 용존산소량	가.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환경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나. 공업화학산업기사 또는 화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또는 화학분석기능사로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1명 이상 다.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기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또는 기계공정설계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축산업을 국민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도농교류문화단지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경제사회기반 정책 수립 및 중장기 비전 제시
  - 향후 수년 간 국제곡물가 급등 및 사료값 지속상승 예상(한국 곡물자급률 26%)
  - 최근 청장년층 귀농인구 증가(가장 중요한 소득원)
  - 친환경축산, 동물복지농장 등으로 축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
  - 과밀사육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지정은 충분한 연구사업 후 도입필요  
(농가의 사육환경조건에 따라 다양한 평가)

###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환경부가 2020년까지 가축분뇨 발생량의 50% 를 처리키로 하였으니 예산확보 등 충분히 축산환경 안정화 기반 조성 후 단계적인 선진화 입법 및 적용
  - 금년 내 법률시행(일부 유예기간 도입)은 많은 혼란과 충돌로 법률의 안정적 시행이 담보되기 어려움
  - 장기적으로 가축분뇨 개별 처리시설은 최종처분시설보다 중간처분시설로 변경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현재 무허가축사, 미신고 배출시설은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가축분뇨의 안정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부분임

###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정책 필요
  - 배출자 부담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나 규모별, 지역별, 단계별 적용으로 통합성확보 및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 필요
  - 발생원 원천감량 및 오염억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
  - 체계적이고 자발적인 자원순환 로드맵 구축(지역단위 자원순환센터설립)
  -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의 자원순환센터 연계화(이력추적관리 강화)

### III.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선진화 방안

-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정책 필요
  - 시민, 산업체, 지자체, 학계, 언론 등이 함께하는 축산환경선진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발생원 처리 효율화 제도 개선 - 고액분리를 통한 고상은 퇴비 또는 연료화, 액상은 액비화 또는 정화방류(지역기초환경시설연계처리강화)로 계절적 수요관리 \*하수관거유입 검토
  - 가축분뇨재활용 산업의 효율적인 행, 재정적 지원(화학비료사용억제)

감사합니다



---

## **토론자 발표 요지**

---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의견

이병모 / 대한한돈협회장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과 관련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행정조치 신설  
▲가축사육제한 구역 확대 등 현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실제 양돈 및 축산농가에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정화방류 수질기준 관련내용과,  
근본적인 가축분뇨 해결대책에 대해 제시하고자 함.

## 1. 정화방류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 문제점 :

- 환경부가 개별농가 가축분뇨 정화처리 방류수 수질기준을 대폭 강화코자 하고 있으며, 특히, 총 질소의 경우는 기존 850ppm에서 250ppm으로 도저히 축산농가가 맞출 수 없는 수준으로 강화코자 하고 있음.

〈개별농가 가축분뇨 정화시설 기준 강화(안): 시행규칙 별표3〉

구 분	항 목	기타지역(일반지역)		비 고
		현 행	1단계	
허가대상배출시설	T-N	850	250	
	T-P	200	100	

## □ 대책 :

- 현행 질소기준 850ppm 수준도 일반 농가에서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며, 대전충남 양돈조합 수질분석팀에서 172건 분석결과도 평균 623ppm 수준으로 850ppm 미만으로 겨우 맞춰나가고 있는 실정임.
- 질소농도를 250ppm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처리공정 수정과 재투자가 불가피하고, 농가의 정화처리시설 운영비 과다로 경영압박이 심각 해져 사실상 가축분뇨 정화처리 방식은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농가의 추가부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대책 및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는 현재 수준인 850ppm 유지가 필요함.

## 2. 근본적인 가축분뇨 처리 대안 제시

### □ 문제점 :

- 환경부가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각종 규제를 강화하고, 사육 중단조치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한계 - 개별 농가단위의 최종 처리방식을 탈피하는 새로운 관리개념 도입 필요
- 환경부에서는 2020년까지 공공처리시설 확대로 가축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 할 계획이나, 기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방식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 되며 처리효율에도 한계가 있음.

### □ 대책 :

- 현행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공공하수도 시설 운영 · 관리 업무지침’에는 분류식 하수관거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나 지역’ 배출허용 기준에만 적합할 경우, 직접 가축분뇨를 하수관거로 유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가축분뇨법 제23조에서도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임.

- 이에, 현행 법령을 최대한 활용하고, 최종 처리를 농가가 아닌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축분뇨 생활 하수 채집관거 직접 연결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검토가 필요함.  
또한 농장에서 정화방류 방식을 이용해 생활하수 수준으로 1차 처리 후 생활 하수 채집관거에 연결하는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경우, 공공처리시설의 **막대한 설치/처리비용, 수송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음.**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의견

이승호 /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I . 기본입장

- 가축분뇨를 자원화 대상이 아니라 공장폐수로 지목하여 법정신을 역행함
  - 2005년 가축분뇨법 제정시, 가축분뇨를 자원화개념으로 도입한 바 있음
- 중요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대상자인 축산농가와는 협의자체도 없었을 뿐더러 관계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충분한 협의가 있었는지 의문임
  - 지난해 환경부가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자자체에 시달할 때에도 일방통보식의 정책발표로 관계부처간 불협화음과 축산농가의 강력한 반발을 산 바 있음
- 선진국과 같이 분뇨처리 자원화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절실함
- 수입개방, 환경규제 강화로 축산업의 입지는 계속적으로 악화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함

## II. 주요쟁점(문제점) 및 개선방안

### 1.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한 무차별적 행정처분 강화

- 정부의 전업·규모화 정책, 까다로운 허가절차 및 요건,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 다수의 무허가 축사가 부득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임
  - 농촌경제연구원 무허가축사 실태조사('11년도) : 축산업등록농가 15~20% 사육규모별 표본조사(17,720호) 결과
  - 무허가 축사 9,925호(44.8%) : 전체무허가 4,176호(23.6%), 부분무허가 3,749호(21.2%)
- 무허가 배출시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사용증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를 강화할 경우 축산업 붕괴가 우려됨

#### ⇒ 개선방안

- 1) 무허가 축사 양성화 특별조치법 시행(‘1992년 사례)
  - ’92년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무허가 축사 양성화 조치가 단행(’92.12 ~ ’93.12)된바 있음
  - 추인완료 ’ 93.12, 76%(대상축사 대비)
- 2) 축산업등록제상 가축사육시설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축분뇨법상 처리시설 허가 및 신청이 가능토록 조치
  - 축산업등록제 도입당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요구에 따라 ‘축사’ 대신 ‘가축사육시설’ 개념으로 등록조치 된바 있음
  - 가축배출시설(축사)은 축산법상 축산업허가제(등록제)을 준용하여 적용하되, 처리시설은 가축분뇨법에서 관리

## 2.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로 인해 축산업 신규투자가 제한되며, 기존 축산 농가는 증·개축이 제한되어 축산업의 심각한 위축 초래
  - 지난해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 시달에 따라, 지자체별로 무분별한 가축사육 제한을 남발
  - 농식품부가 FTA 핵심대책으로 실시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축사 신·개축 지원) 진행에 어려움을 겪음
- 좁은 국토와 대단위 도시화 진행에 따라 축산농가의 입지가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 자연히 양분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대다수인 시점에서 이를 중심으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일방적으로 강화해 나간다면, 축산업은 말살될 수밖에 없음

### ⇒ 개선방안

- 1) 현행 유지
  -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근거인 ‘주거밀집지역’ 정의를 명확화하여 법률해석 남용 방지
    -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의하여 ‘주거밀집지역’ 지정
    - 농식품부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주요 시설 등과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등 적정기준 마련 중
- ※ 환경부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권고안 : 가구당 50m기준으로 5~10호 단위로 묶어 주거밀집지역으로 규정

### 3. 가축사육 중단 및 폐쇄조치 확대

- 신규 사육중단 및 폐쇄조치 관련 조항들은 대부분 현행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무허가 · 미신고 배출시설 행정조치, 사육제한구역 확대, 의무 준공 검사 등을 위반할 경우 ‘허가취소 또는 6개월 사육 중단 및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지나친 독소조항임
- ※ 제18조 1항 4호 : 위현소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률로서 처벌,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이전명령권을 이미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 관련내용 :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한 이후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 → 허가취소

⇒ 개선방안

- 현행 유지

### 4.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 질소 등 처리농도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처리 공정 수정과 재투자가 불가피하여, 농가의 정화처리시설 운영비 과다로 인한 경영 압박이 심화될 우려가 있음
  - 환경부 공공처리 시설 기준으로 잣대를 삼는 것은 지나침
    - 공공처리시설 건설비 톤당 1억원 ↔ 액비, 자원화시설 건설비 톤당 2천만원

⇒ 개선방안

- 현행 수준 유지 : 질소 850mg/L 등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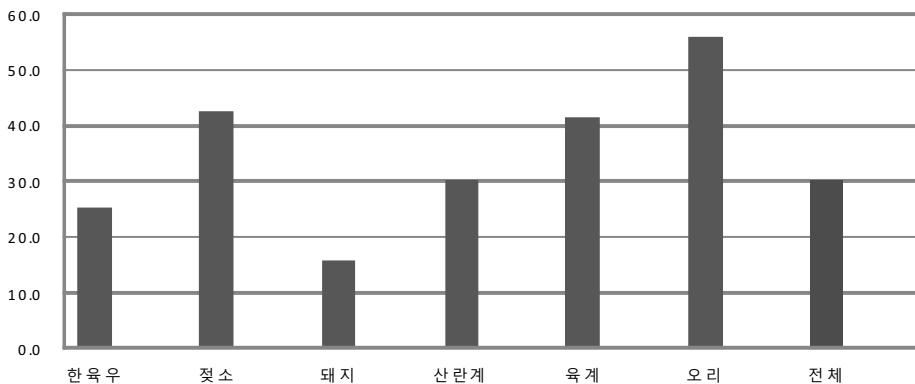
이준동 / 대한양계협회장

## 1. 양계분야 무허가 축사 현황

- 축종별 무허가 축사 비중(%)
  - 정부에서 지난 2007년에 조사한 전국 축사시설현황 일제조사 결과 무허가 축사 비율은 △돼지 34.3% △한·육우 37.5% △젖소 45.1% △닭 47.9% 등으로 조사됨.
  - 농촌경제연구원 농가 표본조사(17,720농가)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전체 축사 면적(1,808만 m<sup>2</sup>) 중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축사 면적비율은 30.4%로 나타남(2011년 6월)
  - 축종별로는 오리가 무허가 축사 비율이 5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젖소(42.6%), 육계(41.6%), 산란계(30.3%), 한·육우(25.6%), 돼지(15.9%) 순으로 무허가 축사 비중이 높게 나타남.(실제 무허가 비중은 클것으로 예상됨)

구분	오리	젖소	육계	산란계	한·육우	돼지
(%)	56.1	42.6	41.6	30.3	25.6	15.9

- 축종별 무허가 축사 비중(%)



## ○ 전체 무허가 축사의 유형

- 유형1(건축물대장에 타 용도로 되어 있으나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7%**
- 유형2(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축사를 확장하여 사육하는 경우): **20.6%**
- 유형3(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75.7%**

## ○ 지역별 무허가 축사면적 현황

구분(%)	경기도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산란계	42.1	25.7	9.0	37.3	32.6	12.7	32.0	19.7	21.1
육계	65.3	13.8	18.1	47.1	43.1	32.6	21.0	50.9	7.3

〈축종별 무허가 축사 면적 현황〉

축종	조사 농가수	건축물 대장 등록 면적	무허가축사면적				총면적	무허 가 축사 비율 (%)
			유형1	유형2	유형3	합계		
	호	천 m <sup>2</sup>	천 m <sup>2</sup> (%)	천 m <sup>2</sup>				
한우	12,783	6,138.7	108.1 (5.1)	580.8 (27.4)	1,428.1 (67.5)	2,116.9 (100.0)	8,255.7	25.6
젖소	1,430	1,267.6	18.9 (2.0)	297.8 (31.6)	624.6 (66.4)	941.2 (100.0)	2,208.8	42.6
돼지	1,742	2,620.2	28.7 (5.8)	126.2 (25.4)	340.9 (68.8)	495.8 (100.0)	3,116.0	15.9
산란계	541	724.0	2.2 (0.7)	43.9 (13.9)	269.4 (85.4)	315.4 (100.0)	1,039.4	30.3
육계	902	1,243.9	11.9 (1.3)	40.7 (4.6)	833.3 (94.1)	885.8 (100.0)	2,129.7	41.6
오리	322	584.6	34.0 (4.5)	42.0 (5.6)	671.0 (89.8)	746.8 (100.0)	1,331.4	56.1
합계	17,720	12,579.1	203.6 (3.7)	1,131.2 (20.6)	4,167.0 (75.7)	5,502.0 (100.0)	18,081. 0	30.4

주 : ( )안의 수치는 전체 무허가축사면적 대비 유형별 무허가축사 비율을 나타냄.

- 닭사육농가의 경우 무허가 축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축사에서 사육하는 무허가 축사비중이 산란계 85.4%, 육계는 94.1%로 나타났으며, 육계의 경우 하우스 계사 사육으로 인해 그 비중이 타 축종에 비해 크게 나타남.

##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현행)

### ○ 가축사육의 제한

- 수질 및 생활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축사의 이전
- 문제점 : 이전에 필요한 유예기간이 1년으로 축산업의 존속 어려움

#### 관련법률 현행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 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 ○ 가축분뇨의 처리시설

- 양계업은 축분(계분)의 위탁처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하지만 (등록)위탁처리업자가 부족하므로 이들업체의 정책적인 지원 또는 활성화 방안이 필요

## 관련 법률 현행

###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5.17>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동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야 하되, 당해 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 농경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이하 “시험림 지정지역”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③ 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요로·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요로·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3. 문제점

#### 가. 환경부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의 문제점

##### ○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 지역 확대

- 국민 소득수준 향상으로 축산물에 대한 소비량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시점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축산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지고 국내산 축산물 가격 상승이라는 결과를 초래
- FTA체결로 인한 수입축산물의 국내 진출 장벽이 낮아져 축산농가의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육 제한구역 확대는 국내 축산업의 퇴보를 야기
- 또한,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경우, 경기도 지역 상당수 지역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신규농가진입 불가뿐 아니라 기존 농가의 시설확대 등에도 제약이 될 것으로 보여 축사현대화 시설 지원 등 현 정책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임

##### ○ 무허가 축사시설 보유 농가의 피해 확대

- 표본농가 조사결과 무허가축사비중은 육계(41.6%), 산란계(30.3%)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육계농가의 경우 비닐하우스 계사 사육형태가 많아 양계농가가 출지에 범법자로 몰리게 되며, 사육중지에 따른 축산물 수급차질 심화

##### ○ 가축분뇨 관리에 따른 방역문제

-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 관리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는 잦은 농가 방문을 통한 실사조사는 방역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 나. 환경부의 지방조례 권고안

- 가축분뇨법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사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일정지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환경부에서 최근 배포(11.10.14)한 표준권고안을 통해 가축사육 제한 거래를 **500m**로 권고함으로서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대한 조례 사항을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별첨1)
- 더욱이 최근 해당 지방조례 권고안을 더 강화해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주거 지역에서 1km로 확대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어 축산농가의 설 자리가 줄어 들고 있음

#### 4. 해결방안

-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 조치 : 범축산업계 숙원사업
  - 무허가 축사의 75.7%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지 않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이므로 이를 양성화하여 무허가 축사에 대한 회생방안 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
-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주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확보등 정당한 보상방안이 마련해야 함**
  - 근기 : 가축분뇨법 제7조 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 가축분뇨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부합되지 않는 농가의 폐업보상비 현실화
- 자원화 처리(축분, 부화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및 기존 농장 축분 시설에 대한 개보수 등의 정책자금 배정을 통해 농가의 자생력강화방안 마련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

- 주거밀집지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 주거밀집지역
    - 가구의 최소단위는 5~10호 기준으로 함
      - 가구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으로 함
      -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  
(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주거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함
    - 가구간의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50m를 기준으로 설정
  - 가축별 거리제한
    - 소·말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 500m
      - ※ 이격 거리는 건물 외벽 또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고 지자체의 지정학적 입지, 환경적요소, 경제적요소, 배출시설 규모 등에 따라 확대·축소 조정 가능
- 가축분뇨법에 규정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 상수원 보호구역(수도법 제7조)
  - 특별대책지역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환경정책 기본법 제22조)
  -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
    - ※ 상수원보호구역(취수시설 포함)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의 경계로부터 유 하거리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음

- 타 법률상 지역·지구 등의 선택적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적, 경제적인 특성에 따라 지역주민 생활환경보전 또는 수질보전을 위해 타 법률상 지역·지구 등의 선택적 적용

구 분	관 련 법	제 한 구 역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자연, 생산, 보전)내 밀집주거지역
	학교보건법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다중이용업소
	자연공원법 제4조, 제23조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한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지역
	지하수법 제 12조	지하수보전구역
	습지보전법 제13조	습지보호구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제2조관련)	환경기준

※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게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제외하여 현실적인 조례 제·개정

- 제한구역내 예외적 가축사육 허용범위
  -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사육
    - 소, 젖소, 말, 돼지, 개 : 5두 이하
    - 닭, 오리 : 20수 이하
  -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또는 지역
    - ※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확대·축소 조정 가능
- 행정사항
  -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 제·개정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을 참고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설정

# **FTA에 따른 시장 개방화시대, 가축분뇨법 개정이 축산 농가에 또다른 위협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이창호 / 한국오리협회장

## **▣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관련 환경부안**

- 1)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 상수원관리 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을 엄격히 제한
- 2) 수질이 심각히 오염된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을 때 환경부장관이 해당 자자체에 지정 권고
- 3) 지역별 환경부하, 농경지 양분실태 등이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과밀 사육지역 추가

### **\* 가축분뇨법 개정안 제8조 제2항**

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가축분뇨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장관의 권고안에 따라야 한다.

## ■ 문제점

- 1) 사육제한구역은 지자체별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명시하는 것은 더욱 더 강한 규제로 작용
- 2)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시 농가의 신규진입이 제한되고 기존농가는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지역 축산업의 위축초래

## ■ 대책

- 1) 사육제한과 관련하여 법령개정이 아닌 현행의 지자체별 조례로 운영
- 2) 농식품부와 협의하여 과밀사육지역으로 고시되지 않도록 추진
  - \* 축산업허가제와 연계하여 추진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의견

이철호 / 파주연천축협조합장

## ■ 축산업 현실

- 2011년도 국내 농어총생산액 44조3천960억원 (축산업 18조 620억원 / 40.7% 차지)  
(전체 농업생산액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함)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체결로 인한 축산분야의 피해 증가.
- 2007년부터 급상승하는 사료 값 및 물가(유가)상승으로 인한 축산분야 생산비 상승.
- 2010년 말 ~ 2011년 초 발생된 FMD로 인한 피해여파 지속.
- 전반적인 축산분야에 대한 규제 강화 분위기.

## ■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우리나라 축산농가 중 무허가 농가수(추정치)는 약 45%(창고 및 일부건축물 포함) 달하며 이 무허가 농가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등 행정조치 할 경우 축산업 붕괴 우려
- 축사의 건축물이 인허가가 되지 않아 가축분뇨관리법상 무허가,미신고 된 경우 이므로 축산법상 등록된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의 배출시설,허가 및 신고 신청을 접수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임.

#### ■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과밀사육지역 고시)

- 축산단지 등에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시설의 확충(보완책)과 아름다운농장 가꾸기 사업 등으로 환경 친화적 축산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기반 집중화, 규모화를 유도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

#### ■ 퇴비, 액비의 검사방법 등 마련

- 생산자인 축산농가에게 가축사육과정에서 발생되는 퇴,액비를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하는 것은 부당함.
- 환경에 위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기준이 필요함.

#### ■ 공공처리시설 설치,운영주체를 지역농-축협으로 단계적 전환

-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처리시설을 지역 농-축협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 회피(운영조합 만년 적자 예상)
-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 중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은 부지 선정(시, 군 소유지 또는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함.)

#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의견

이제만 / 대전충남양돈조합장

## 1.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기준등 강화

###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	항목	구분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돈사 총면적 1,000m <sup>2</sup> (330평 이상) 허가농가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특정지역 (일반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50 이하	4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부유물질량 (mg/L)	50 이하	40 이하	150 이하	120 이하
	총질소 (mg/L)	260 이하	120 이하	850 이하	250 이하
	총인 (mg/L)	50 이하	40 이하	200 이하	100 이하
기타지역 (청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50 이하	12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부유물질량 (mg/L)	150 이하	120 이하	350 이하	150 이하
	총질소 (mg/L)	850 이하	250 이하		400
	총인 (mg/L)	200 이하	100 이하		100

- ※ 질소농도를 850ppm에서 250ppm수준으로 강화 할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대규모 재투자가 불가피하고 농가의 정화시설 운영비 과다로 인한 경영압박 심각
- ※ 기준강화로 농가가 퇴,액비화 등으로 전환시 텁밥 수급 상황이 현재도 열악한 상태에서 대란수준으로 악화되고 가격 급등등 농가의 경영악화가 예상되며 액비의 살포 농지 확보에 대한 문제, 퇴,액비 저장문제등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
- ※ 최소한 질소농도 규제는 500ppm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

## 2.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행정처분 강화

- 1) 무허가 농가수 대략 한우, 젖소, 양돈 30% 수준, 양계 50%, 오리 70%수준으로 사용중지 또는 폐쇄명령등 행정조치 할 경우 축산업 붕괴 우려 높음
- 2)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돈사,우사,계사등)이 환경오염방지 차원에서 벗어 난다고 판단하고 있음으로 현재 건축물 등기 상의 배출시설로만 처리시설 인허가를 득하는 방법에서 축산업등록증 상에는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이 등재되어 있음으로 건축물 등기상이 아닌 축산업 등록증상의 배출시설을 인허가 사항에 포함시켜 처리시설을 농가에서 확보할 수 있게 인허가 사항 변경

## 3. 퇴비, 액비의 검사방법 마련

- 1) 축산농가가 가축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퇴, 액비를 상품의 규격 성분증을 규제관리하는 비료관리법으로 관리한다는 내용
- 2) 전문적인 기술 및 시설이 없는 농가가 기준에 따르는 것은 불가능
- 3) 환경을 유해하지 않는 수준의 별도의 농가 생산 퇴, 액비 기준이 필요
- 4) 하위 시행규칙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개정으로 농가 퇴, 액비 기준 마련이 필요

---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 규칙 개정(안)**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제1조부터 제5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자원화하거나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하고 **환경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의 발전 및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 · 돼지 · 말 · 닭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 · 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 · 요에 섞인 것(퇴비 · 액비의 기준 또는 방류수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 · 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원화시설”이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퇴비 · 액비 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만드는(이하 “자원화”라 한다) 시설을 말한다.
5. “퇴비(堆肥)”란 가축분뇨를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 중 액비를 제외한 물질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6. “액비(液肥)”란 가축분뇨를 액체상으로 발효시켜 만든 비료성분이 있는 물질로서 농림 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7. “정화시설(淨化施設)”이란 가축분뇨를 침전 · 분해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이하 “정화”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

8.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이하 “처리”라 한다)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9. “공공처리시설”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이하 “지역조합”이라 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설치하는 자원화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0. “생산자단체”란 축산업자를 회원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말한다.

**제3조(국가 · 지방자치단체 · 축산업자의 책무)**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발생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등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기술을 연구 · 개발 · 지원하고,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기술적 ·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축산업자는 친환경적인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 환경의 보전 및 환경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의 광역처리)** 2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도(이하 “시 · 도”라 한다) 또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 등)** ①시 · 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 · 도지사는 관할지역 안의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폐기물 관리법」 제9조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공공계획이 수립 · 변경되는 등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 ·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제4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환경부 장관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 그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한국환경 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을 수 있다.

#### 제6조(삭제)

제2장(제7조부터 제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2장 가축분뇨의 사전관리

제7조(축사이전 비용 등의 지원)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농경지의 양분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의 가축이 사육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 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비료의 공급량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농경지에 포함된 비료의 함량 및 공급량이 비료의 수요량을 초과하는 지역의 축산농가가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가축분뇨, 퇴비 및 액비의 살포, 가축의 과밀사육(過密飼育) 등으로 인해 환경이 현저하게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 등의 실태를 조사(이하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이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가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계획 및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다른 사람 토지의 출입) ①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분뇨등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조사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②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가축의 전부 또는 일부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 지역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지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에 따른 수질의 목표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으로서 가축분뇨로 인하여 수질오염이 현저하게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경부장관의 권고안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가축분뇨의 적정한 관리 및 이용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환경친화축산농장(이하 “환경친화축산농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볼일 수 있다.

1. 「축산법」 제26조에 따른 축산업의 등록기준 이하로 가축사육의 밀도를 유지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할 것
2.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전량 농지에 환원할 것
3. 조경수를 심는 등 자연친화형 축사를 조성할 것
4. 악취저감시설을 설치·가동하여 주변의 생활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5.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킬 것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축사 및 가축분뇨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2. 제41조에 따른 보고·검사의 면제
3.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⑤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생산자단체는 환경친화축산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 또는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 ⑥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8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장 가축분뇨의 처리

**제10조(가축분뇨처리의무)** 가축을 사육하는 자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는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이하 “공공수역”이라 한다)에 유입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 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처리시설의 설치의무 등)** ①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와 같은 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시설설치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퇴비화시설·액비화시설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시설(이하

“바이오에너지시설”이라 한다) 등 자원화시설이나 정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시설설치자 중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환경부령에 따른 기준에 따라 액비의 살포에 필요한 초지·농경지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시험림의 지정지역(이하 “시험림 지정지역”이라 한다)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중 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살포지역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이거나 일시적으로 살포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살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설설치자 중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요로·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뇨를 분리·저장하지 아니하여도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이하 “방류수수질기준”이라 한다)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설치자는 연접한 배출시설 또는 동일 시·군·구내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동 처리하기 위한 공동처리시설(이하 “공동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시설설치자는 사업장별로 해당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시설설치자는 공동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 공동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분과·요로·분리·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 및 변경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⑨ 처리시설의 설치기준 그 밖에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방류수수질기준) ① 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나 상수원의 수질보전, 생활환경보전 또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시 ·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권리 · 의무의 승계)** ①시설설치자가 배출시설 · 처리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시설설치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 변경허가 ·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시설설치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②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16조의2, 제17조, 제18조 (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18조의2 및 제18조의4,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시설설치자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리 · 의무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등)**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완료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준공검사(이하 “준공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신청한 준공검사 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배출시설 · 처리시설 설치자
2.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 설치자
3.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②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준공검사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검사대상시설이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준공검사의 합격 여부를 결정 ·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및 제12조 제9항에 따른 설치기준
2.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및 제27조제4항에 따른 재활용 시설의 설치 · 운영기준

### 3.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 및 가축분뇨처리업자의 허가기준

③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을 한 자원화시설 설치자 또는 정화시설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가축분뇨가 제2조제5호에 따른 퇴비의 기준(이하 “퇴비기준”이라 한다) 이내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액비의 기준(이하 “액비기준”이라 한다) 이내 또는 방류수수질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재활용 신고자 및 퇴비 · 액비를 생산하는 처리업자는 가축분뇨가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부산물비료의 공정규격(이하 “비료공정규격”이라 한다) 이내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중에는 제17조 제4항, 제27제5항, 제53조제1항제1호 · 제4호 및 제53조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준공검사 합격통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제3항 전단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 자체 없이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오염도, 퇴비 · 액비기준 및 비료공정규격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후 대통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오염도, 퇴비 · 액비기준 및 비료공정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검사의 절차 · 기준 및 검사기관의 관리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처리시설 등의 설계 · 시공) 처리시설 및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 · 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수질분야만 해당), 또는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설계 ·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설계도에 따라 시설설치자가 처리시설(자원화시설에 한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의2(가축분뇨의 처리) ①시설설치자(제12조제4항에 따른 공동처리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스스로 처리하거나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설치 · 운영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조합의 장,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를 한 자(이하 “재활용 신고자”라 한다),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혜가를 받은 자(이하 “처리업자”라 한다) 또는 제28조제5항제3호에 따라 가축분뇨시설관리업의 혜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관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자는 그 가축분뇨를 배출,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리할 때마다 가축분뇨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입력내용·방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 및 액비를 수집·운반하는 자는 가축분뇨 및 액비를 운반하는 중에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된 가축분뇨 인계·인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계번호를 숙지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① 시설설치자·재활용신고자(그 퇴비·액비의 살포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퇴비·액비 살포를 대행하는 자(이하 “퇴비·액비살포 대행자”라 한다)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처리 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 또는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환경공단 등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가축분뇨의 정화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가축분뇨의 정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자원화시설에 따라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경우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액비를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 다만, 발효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 · 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된 액비를 확보한 초지, 농경지, 시험림 지정지역 또는 골프장 외의 장소에 뿌리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살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행위
6. 퇴비 또는 액비를 비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버리는 행위나 퇴비 또는 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키는 행위
7. 정당한 사유 없이 정화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방류수수질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행위

②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시설설치자 ·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미리 처리시설의 응급조치 및 가축분뇨의 위탁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방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설치자 ·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처리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12조제9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지 아니하게 설치 · 운영된다고 인정하거나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이 제1항 또는 제3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설설치자 ·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⑤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를 살포 또는 방치하여 생활환경 또는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방법의 변경이나 수거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8조(허가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3. 시설설치자가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한 경우
4.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고시한 이후 해당 시·군·구의 조례를 위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한 경우
5.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증설하는 경우
6.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
7.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사육한 경우
8.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변경한 경우
9.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가축을 사육한 자
10. 시설설치자가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1. 제17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한 경우
12.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정화시설의 검사결과 방류 수수질기준을 계속 초과하거나 퇴비 또는 액비의 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13. 「축산법」 제25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과징금 처분) ①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설치자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라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중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또는 가축처분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2조에 따라 처리시설(공동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17조 제2항,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정화시설의 검사결과 방류 수수질기준을 계속 초과하거나 퇴비 또는 액비의 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
  -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설치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 ④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⑤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 시설 및 처리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설치장소가 이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17조제2항·제4항·제5항·제18조·제18조의3에 따른 개선명령·조치명령·사용중지명령·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가축분뇨처리의 금지명령을 받은 재활용 신고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방류수 또는 퇴비·액비성분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 기관에 오염도, 퇴비·액비기준의 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5장(제19조부터 제23조의2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4장 가축분뇨의 이용촉진

제19조(퇴비·액비의 이용촉진계획 수립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생산된 퇴비·액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비·액비의 생산자와 경작농가의 연계체계를 구성하기 위한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른 퇴비·액비이용촉진계획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20조(퇴비·액비의 품질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관할구역 안에서 사용되는 퇴비·액비의 성분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② 퇴비·액비를 생산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료를 채취하여 생산자단체에 성분 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제21조(퇴비·액비의 적정한 살포를 위한 행정지도 등)** ①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는 농림 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작목별 적정시비량 및 살포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도기관을 통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촉진하고 그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설치자 또는 경작농가에 대하여 작목별 적정시비량·살포방법 및 살포 시기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지역주민 등의 협조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액비가 집중적으로 살포되는 시기에 필요한 기간을 액비살포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퇴비·액비의 유통 활성화)**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퇴비·액비유통협의체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퇴비·액비유통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가축분뇨의 통합관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 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과 판매망을 연계하여 가축분뇨의 수거·자원화, 퇴비·액비의 유통관리 등을 포함하는 통합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2(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 신고 등의 의제) ①가축분뇨와 음식물폐기물 등 유기성 폐기물과 혼합 · 처리하여 바이오에너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제24조제1항에 따른 설치 승인을 받는 경우 또는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고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지역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처리업 시설을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나 신고 또는 승인의 처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유기성폐기물과 혼합 · 처리하는 경우 제15조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검사의 절차 · 기준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을 적용 한다.

제5장(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장 가축분뇨의 공공처리

제24조(공공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조합의 장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조합의 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공공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조합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하수도법」 제2조 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또는 같은법 제2조제10호의 분뇨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최종 처리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계획을 결정 · 고시 또는 변경고시를 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조합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중간 처리한 가축분뇨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에의 유입기준에 적합하게 유입·처리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조합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처리대상 배출시설의 범위 및 처리대상 지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해당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가축분뇨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2.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분리하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⑧ (삭 제)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역조합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에서 가축분뇨를 처리할 때에는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⑩ 지역조합의 장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지역조합의 장 및 공공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시설관리업자(이하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3조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
2. 비료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행위
3. 공공처리시설로 유입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지 아니한 상태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중간배출하거나 중간배출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처리시설의 처리과정에서 액비를 생산하기 위하여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을 때에 미리 중간배출이 필요하다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가축분뇨에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시·도지사가 가축분뇨처리의 공법상 물을 섞어야만 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거나 생산한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고, 그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2항에 따라 방류수수질을 자가측정하지 아니하거나 퇴비·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4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한 경우

④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켜 처리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조합의 장은**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역조합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해당 공공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6조(가축분뇨의 처리비용 부담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시·도지사가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지역조합의 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조합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수집·운반업자는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군수·구청, 지역조합의 장 및 제1항에 따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수집·운반

업자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른 해당 지역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처리 시설에서 처리되는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해당 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조합의 장이 그 처리비용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조합의 장이 징수하는 비용은 공공처리 시설의 운영 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제27조부터 제3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6장 가축분뇨 관련 영업

**제27조(가축분뇨의 재활용)** ①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양 이상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자가 가축분뇨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한자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제28조제5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를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설치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재활용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 신고자가 제17조제1항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된다고 인정하거나 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설치·운영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재활용신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시설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가축분뇨의 반입금지 등 가축분뇨처리

의 금지(이하 “처리금지”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1.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경우

**제28조(가축분뇨관련영업)** 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 또는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업(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 사업계획서 및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허가의 적합 여부를 미리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그 허가의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적합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하여야 한다.

⑤가축분뇨관련영업의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분뇨수집·운반업 : 가축분뇨를 수집하여 운반하는 영업

2. 가축분뇨처리업 : 바이오에너지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갖추어 가축분뇨를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영업

3. 가축분뇨시설관리업 : 처리시설의 관리를 대행하는 영업

⑥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가축분뇨관련영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⑧제1항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허가 · 신고에 따른 권리 · 의무의 승계)** ① 제27조에 따른 재활용 신고자 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 ·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 · 변경허가 ·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재활용 신고자 또는 가축분뇨관련 영업자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31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지위를 승계한 법인이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합병일부터 6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개임하여야 한다.

**제30조(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 ① 가축분뇨관련영업자(종사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가축분뇨관련영업자는 제28조제6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준수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양 또는 기간을 초과하여 가축분뇨를 보관할 수 없으며,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에 따라 그 허가가 취소된 자로서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중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32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 제3호 또는 제1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시설을 사용한 자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 및 액비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6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운반 중에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 하여도 인계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8. 제17조제3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9.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한 경우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
  11. 제28조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12.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13.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 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
  14.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
  15.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6.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18.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 · 검사 등을 거부 ·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과징금) ①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제32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처분이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생활환경 및 수질오염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보전사업 외의 용도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처리시설 설계·시공업의 등록 등)** ① 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이하 “설계·시공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화시설 또는 자원화시설**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의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설계·시공업자”라 한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설계·시공업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29조 및 제31조를 각각 준용한다.

⑥ 도급받은 공사 대한 하도급의 범위 등 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설계·시공업자는 그 설계·시공행위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불구하고 이를 설계·시공할 수 있다.

⑧ 설계·시공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및 공종(工種)의 특성 등을 가지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다.

**제35조(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
  3.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부실하게 하거나 제34조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4.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5.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6.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7.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8. 제34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임원 중 제31조제5호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한 경우 또는 출입·검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설계·시공업자의 계속공사)** ① 제35조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설계·시공업자는 그 처분 전에 체결한 계약분에 한하여 그 공사의 설계·시공을 계속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업자가 계속하는 공사의 감리 등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공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를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설계·시공업자가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후 제1항에 따라 설계·시공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시공을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설계·시공업자로 본다.

**제37조(기술관리인)**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처리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설관리업자에게 해당 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이 선임된 사업장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기술관리인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제37조의 2부터 제47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장 보칙

**제37조의 2(가축분뇨 인계 · 인수 내용 등의 전산 처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입력된 가축분뇨 또는 액비의 인계 · 인수 내용과 제3항에 따라 입력된 기록(이하 “전산기록”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이하 “전산처리기구”라 한다)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자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하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전산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설설치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 변경신고 및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기록 · 보존 및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전산처리기구의 장은 전산기록이 입력된 날부터 3년간 전산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전산정보를 해당 가축분뇨의 배출자, 수집 · 운반자 또는 처리자가 확인 ·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배출자, 수집 · 운반자 또는 처리자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시 · 도지사가 이를 검색 ·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전산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고 있는 자 중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가축분뇨업무담당자”라 한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2.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3.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분뇨업무담당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업무담당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장부의 기록·보존)** 재활용신고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공공처리시설 설치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존기간은 기록을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 가축분뇨의 배출량 및 처리량
2. 가축분뇨의 수집장소·수집량 및 처리상황
3. 처리시설의 운영상황 등

**제40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등)**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제41조(보고·검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시설설치자
2. 제25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3.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
4.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자
5. 제34조에 따른 설계·시공업자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처리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방류수수질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국고보조)**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조합**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축분뇨의 자원화 확대 및 친환경 축산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축산업자·경작농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3조(처리시설 및 처리기술의 평가)**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분뇨의 처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및 관련 기술 등을 평가하여 축산업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생산자단체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인력 및 장비지원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가축분뇨관리 및 처리 실적의 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구역 안에서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환경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가축분뇨 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2. 제11조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신고

3.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 신고
4.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5. 제34조제1항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46조(청문)**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권한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8조 또는 제18조의3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시설의 폐쇄명령
3. 제32조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의 취소
4.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 등록의 취소
5. 제35조에 따른 설계·시공업의 영업정지(6개월)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생산자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38조에 따른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장(제48조부터 제53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장 별칙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의3에 따른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에 따라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기능에 장해를 주어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없게 방해한 자
4. 제2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27조제6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자가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를 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2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로서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8. 제27조제6항에 따른 처리금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로서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설계·시공업자로서 제32조 또는 제35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자

12. 제3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 시킨 자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4.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제15조를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은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킨 자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한다)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처리업자 또는 시설 관리업자로서 제1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2조에 따른 처리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8.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킨 자
9. 제17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설의 개선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한 자
14. 제28조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 빌려준 자
1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하여 설계·시공업을 한 자
16.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 성명을 사용하여 설계·시공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자

**제5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또는 처리업 시설을 사용한 자
4. 제17조에 따른 시설설치자·처리업자 또는 시설관리업자 및 제27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 신고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로서 제10조를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퇴비 또는 액비를 유출하여 공공수역을 현저하게 오염시킨 자
5.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한 자
6. 제27조제4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기준을 위반하여 재활용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7.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관련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9. 제41조제2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5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기준 또는 액비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 또는 비정상 운영 신고를 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한 자
3. 제2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비료공정규격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4. 제28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비료공정규격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여 그 배출시설을 사용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하여 방류하거나 퇴비기준 또는 액비기준에 맞지 않게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한 자
3. 제16조를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 하게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여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3. 제12조제3항에 따른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9항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5. 제1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의 인계 · 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때에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시설설치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
6.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 번호를 알려주지 아니한 시설설치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
7. 제17조제3항에 따른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한 시설설치자
8. 제24조제7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으로서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방류수의 수질검사, 퇴비 · 액비의 성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0.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집 · 운반 또는 처리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 · 운반 또는 처리한 자
11. 제2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재활용을 한 자
12. 제28조제1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13. 제28조제6항에 따른 영업구역을 벗어나 가축분뇨수집 · 운반업을 하거나 그 밖의 필 요한 조건을 위반한 자
14. 제34조제6항에 따른 설계 · 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5. 제37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6.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분뇨업무담당자에게 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18. 제40조를 위반하여 휴업 · 폐업 또는 재개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9.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 자료제출을 한 자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부과 · 징수한다.

⑤<삭 제>

⑥<삭 제>

⑦<삭 제>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 제23조의2, 제24조, 제25조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호·제5호 중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의 경우 제18조의 3, 제46조제1호 및 제48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6조의2제2항·제3항, 제32조제5호·제6호, 제37조의2, 제39조제1항 후단 단서조항 및 제53조제3항제13호·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리시설 및 재활용 시설 등의 준공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퇴비 또는 액비를 생산하는 처리시설, 재활용 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의 처리시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에 따른 바이오에너지시설은 이 법 시행 후 가축분뇨 관련영업 사업계획서 및 처리업 허가신청서(변경허가 또는 변경허가 포함한다)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 시설의 설계·시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시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재활용 시설은 이 법 제16조에 따른 설계·시공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역조합의 장이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역조합의 장이 설치한 공공처리시설은 이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바이오에너지시설의 처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7조에 따라 재활용 신고를 받아 설치·운영하고 있는 바이오에너지시설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법 시행 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제28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7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6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시설의 규모를 100분의 50 미만으로 증설하거나 감소하여 배출시설 설치대상이 변경되는 경우
4.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는 경우(위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내용 중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생 략)
  - 나. 액비의 살포를 법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신고자(이하 “재활용신고자”라 한다)에게 위탁한 위탁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제7조제2항제2호 및 제4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처리시설의 처리방법 또는 처리공법의 변경(가축분뇨를 영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처리로 변경하거나 위탁내용 중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생 략)
  - 나. 액비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때에는 위탁한 자를 변경하거나 위탁량 100분의 30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제10조 관련)

#### 1. 공통기준

- 가.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저장·보관시설의 구조물은 토압, 수압, 자체중량, 그 밖에 무게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고 부식되거나 변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 저장·보관시설의 바닥·벽은 물 또는 가축분뇨 등이 스며들거나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방수재료로 만들거나 방수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 다. 가축분뇨 및 생산된 퇴비·액비를 저장·보관하는 때에는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가 빗물·지표수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비가림시설이나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가축사육과정 중 운동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축분뇨가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분뇨 유출방지턱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가축분뇨를 용이하게 투입할 수 있는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점검, 보수 및 오니·스컴·찌꺼기의 청소를 쉽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펌프 등 기계류는 계속하여 가동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구조로 하되 소음과 진동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바. 가축분뇨의 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구조이어야 하며, 처리과정 중 막힘, 역류 및 누수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사. 가스배출장치는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고 발생가스가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하거나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자. 가축분뇨의 유입량이 증감되어도 처리시설에는 일정량이 유입되어 처리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화학적 처리방법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2. 퇴비화시설

- 가.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톱밥 등 수분조절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 건조·발효할 수 있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발효시설 등은 수분이 증발하기 쉬운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생산된 퇴비를 최종 처분하기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퇴비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퇴비저장시설은 퇴비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물 또는 가축분뇨가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3. 액비화시설

- 가. 액비화시설에는 축사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저장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조를 2단으로 설치하여 가축분뇨가 1단계 저장조를 거쳐 2단계 저장조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1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4개월 이상, 2단계 저장조는 가축분뇨를 1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어야 한다.
- 나. 액비저장조는 강우 대비 지붕을 설치하거나 액비의 비수기시 액비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4. 협기성 생물학적 시설

- 가. 협기성소화조 설치 시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1) 적정 체류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용량과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 2) 가스, 소화슬러지 등의 배출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3) 소화조 내의 협기성미생물이 활성화되도록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시설과 온도 등에 대한 모니터링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필요시 가스 생성 등을 검지할 수 있어야 한다.
  - 4) 소화조 내부에서 가축분뇨와 미생물이 잘 혼합되어 될 수 있도록 교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5) 소화조 내부 수면에 발생하는 스컴을 쉽게 제어할 수 있고 소화조 하부에 퇴적물이 누적되지 않거나 주기적으로 퇴적물을 제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처리시설 주변 또는 지하 등으로 가축분뇨 또는 소화액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다. 소화액 또는 소화슬러지는 적절한 처리를 거쳐 액비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정화처리하여야 한다.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1호 외의 정화시설 방류수수질기준(제11조제1항 관련)

지역	항목	구분	
		허가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특정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40 이하	120 이하
	부유물질량 (mg/L)	40 이하	120 이하
	총질소 (mg/L)	120 이하	250 이하
	총인 (mg/L)	40 이하	100 이하
기타지역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mg/L)	120 이하	150 이하
	부유물질량 (mg/L)	120 이하	150 이하
	총질소 (mg/L)	250 이하	400
	총인 (mg/L)	100 이하	100

비고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5조(처리시설의 관리기준)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처리시설을 항상 가동할 것
2. 뒤틀림 현상, 누수, 바닥의 균열 등이 없는지 확인하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설비의 가동 및 방류수수질 상태 등을 매일 점검하거나 보수할 것
3. 호기성 · 협기성 생물학적 시설은 분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 · 습도 · 공기량을 유지하여야 하며, 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저장시설에서 가축분뇨 또는 퇴비 · 액비, 소화액 등이 축사주변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운영할 것

4. 가축분뇨, 퇴비 또는 액비의 보관장소는 넘치지 아니하도록 여유용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등이 설치한 처리시설 중 정화시설의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리일지에 가동시간, 가축분뇨배출량, 시설운영자, 그 밖에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할 것
  6. 처리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마다 1회 이상 자가 측정하거나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가 측정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그 내용을 3년 동안 보관할 것. 다만, 자원화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3개월
    - 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처리시설 : 6개월
  7. 자원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사육두수, 가축분뇨배출량 등을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매일 기록하고,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할 것
  8.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분·뇨로 분리하고 생산된 퇴비를 치분하기 전까지 퇴비저장시설에 보관하고, 퇴비저장시설 내에 빗물·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9.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 관리할 것
10. 처리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침전오니·스컴(scum) 및 찌꺼기의 제거 등 내부 청소를 연 1회 이상 하고, 청소과정에서 발생한 오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
    - 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탈수하거나 퇴비화하여 처리하는 방법
    - 나. 재활용신고자나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

별표 4 제1호중 “악취를”을 “악취는 「악취방지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게”로 하고 제2호 끝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되며 [별표 1]에 따른 액비 살포에 필요한 면적에 맞게 살포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1.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되는 누계를 말한다)
2.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또는 대표자
3. 재활용 대상 가축분뇨의 수집지역(수집농가를 포함한다)
- 4.(생 략)
5. 수집 · 운반장비(임시차량은 제외한다)의 증차

별지 제11호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12호 서식 비고란 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별지 1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1. 사육 마릿수 · 축분 발생량은 매일 기재하고 퇴비 · 액비 생산량, 처분량, 재고량은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1. . .>

결 재	환경관리인	부서장	농장장	대표자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

(앞쪽)

년	월	일	요일 :	날씨 :	온도 :
(지역 : )					

### 1. 가축별 사육 마릿수

구분	전일(마리)	금일(마리)	구분	전일(마리)	금일(마리)	비고

### 2. 처리시설 운영

가. 처리시설 가동시간대(처리방법: )

구분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시간대별 근무자 직·성명																									

※ ① 구분란은 1, 2, 3차 시설로 구분되어 설치된 경우 구분표시

② 처리시간대 표시는 검은색 또는 사선 등으로 표시할 것

나. 처리용량( $m^3$ /일) :

다. 전력사용량: 전일(kWh) :

금일(kWh):

기기명	규격	가동시간	사용량 (kWh)	기기명	규격	가동시간	사용량 (kWh)	적산전력계 지침	참고 사항
								검침시간	

297mm×210mm[보존용지(2종) 70g/m<sup>2</sup>]

(뒤 쪽)

#### 라. 약품사용량

약품명	구입량	소모량	잔고량	약품명	구입량	소모량	잔고량

#### 마. 방류수수질검사

(단위 : mg/l)

구 분	B O D	S S	T - N	T - P	분 석 일	분 석 자 명
최적 방류수						

#### 3. 용수 공급원별 사용량과 가축분뇨배출량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 <sup>3</sup> )	금일 지침 (m <sup>3</sup> )	사용량 (m <sup>3</sup> /일)	검 침 시간대	구분	항목	전일 지침 (m <sup>3</sup> )	금일 지침 (m <sup>3</sup> )	사용량 (m <sup>3</sup> /일)	배출 및 사용량 (m <sup>3</sup> /일)
							가축분뇨 발생량				
상수도							가축분뇨 배출량				
지하수							생활 용수량				
기 타							기타 (증발량)				

#### 4. 축분 및 오니 처리내용

축분 · 오니 발생량(m <sup>3</sup> )	처리량(m <sup>3</sup> )	보관량 (m <sup>3</sup> )	함수량(%)	보관장소	내부 청소일

※ 자가처리장:

위탁처리업소명:

#### 5. 처리시설 고장 유무 및 특기사항

#### 6. 지도 · 점검을 받은 사항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1. . . .>

## 퇴비 및 액비 관리 대장

대표자 : (인)

비고

1. 사육 마릿수사육 마릿수 · 축분발생량은 매일 기재하고 퇴비 · 액비 생산량, 처분량, 재고량은 변동이 있는 경우만 적습니다.
  2. 생산량은 퇴비화시설 또는 액비화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또는 액비의 양을 말 합니다.
  3. 생산량 · 처분량 · 재고량은 변동이 있을 경우에만 적습니다.
  4. 자체 처리 시에는 대상토지(허가 · 변경허가 · 변경신고 또는 신고 · 변경신고시 확보된 토지) 등의 지번 · 면적 등을 적습니다.
  5. 외부 반출(퇴비재활용업자, 공공처리장 및 해양배출 등)의 경우 수거업체(자)명, 수량 및 인수자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사항을 적습니다.

297mm×210mm [보존용지(1종)70g/m<sup>2</sup>]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 <개정

2011. >

(앞 쪽)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증명서

① 신고번호	제 호	② 신고 연월일	년 월 일
③ 상호(명칭)			
④ 성명(대표자)			
⑤ 사업장 소재지	(전화 : )		
⑥ 재활용 대상물질 및 수집농가			
⑦ 회수자원 이용방법			
⑧ 재활용시설 및 장비 내역			
⑨ 1일 평균처리능력	액비화 : , 퇴비화 : , 기타 :		
⑩ 주요 발생지역			
⑪ 초지 또는 농경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발급기관장

직인

182mm×257mm[보존용지(1종) 120g/m<sup>2</sup>]

## (변경사항)

(뒤 쪽)

### (처분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之日起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의 경우 별표 3 제2호의 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류수수질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또는 설치신고·변경신고 신청을 최초로 제출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로서 별표 3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자는 2013년 6월 31일까지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및 별표3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MEMO



**MEMO**



## MEMO



## MEMO



## MEMO